

언론중재

ISSN 2005-2952

2023 Winter Vol.169

04

FOCUS ON MEDIA

언론의 자살보도 이슈와 전망

42

사건 속 법률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
사적 제재는 정당한가

50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과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언론중재

2023 Winter Vol.169

인쇄

2023년 12월 25일

발행

2023년 12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1층

전화

02-397-3044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편집위원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FOCUS ON MEDIA

언론의 자살보도 이슈와 전망

1. 국내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동향과 특징 04

위준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장

2.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본 언론의 자살보도 16

김정민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장,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3. 최근 자살보도 주요 이슈,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언 30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지는 집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사건 속 법률

‘축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사적 제재는 정당한가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42

Journalism & Ethics

포털 생태계에서 길들여진 방식 벗어나기

이샘물 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장

72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과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50

해외통신원

보수적 사법 적극주의 시대와 New York Times v. Sullivan판결

이효진 변호사, 미국변호사(Washington D.C.)

78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디지털 권리장전과 표현의 자유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58

위원회 News

88

판례토크

대북전단 살포금지규정은 왜 위헌판단을 받았을까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
2020헌마1733(병합) 결정 분석 —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66



01

국내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동향과 특징

위준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장



1. 서론

‘베르테르 효과’ 대중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나 자신이 존경하거나 모델로 여겼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그 대상을 모방해서 자신 또한 자살을 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미디어가 이러한 모방자살 현상을 유발한 최초의 사례는, 아마도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독일에서 출판된 이후 이 책을 읽은 다수의 청년들이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죽음을 따라 유사한 의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했던 것일 테다. 이 용어는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David Philips)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스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1947년~1968년 영국과 미국의 신문에 자살 보도가 공개된 직후 실제로 자살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자살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알려질수록 그 이후의 자살 증가 빈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다고 해서 주인공처럼 노란 조끼에 푸른 연미복을 차려 입고 같은 방법으로 죽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17세기에는 교황청이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소설책 한 권이 오늘날의 TV와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미디어의 급격한 발달로 영향력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빨라진 오늘, 미디어를 통한 자살 모방 효과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세계 각국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인¹⁾ 중 하나로 ‘미디어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인종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미디어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미디어와 관련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2. 해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의 특징

아일랜드의 미디어 가이드라인(Media guideline for reporting suicide)은 민간단체 ‘사마리아인(Samaritans)’에 의해 개발되었고 현재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매우 세부적이다.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필

1) 여기에는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차단, 미디어와의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원, 자살 고위험군 조기식별 및 사후지원 등이 포함된다.

름(영화) 제작자, '인쇄매체 출판인' 등 매체별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각각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살'과 '자해', '살해 후 자살' 등 유형에 따라 내용을 세분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의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내용 구성에서 비슷한 부분이 매우 많다. 한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청소년·청년과 관련된 자살사건을 취재할 때에는 그들이 처해있던 사연에 보도의 비중과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을 강조한 점이다. 이는 정서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청년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이를 자신에게 동일시하여 모방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성인보다 더욱 높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는 자살예방 사업에 있어 미디어와의 정책연계를 세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다.

같은 독일어 문화권에 속해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은 언론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 독일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의 서두에서 '언론인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독일 자살예방협회는 보도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정말 꼭 보도해야 하는 뉴스인가?'에 대해 언론인들이 스스로 따져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또한 '자살사건보도를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및 기자협의회는 '보도할 수 있는 자살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1.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우
2. 공인이거나 자살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3. 경찰에 의해 보고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4.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만한 내용이거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
5. 잘못된 소문과 소송 등으로 발생한 자살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이 필요한 경우

사실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는 방침을 언뜻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자살 보도를 허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자살 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와 사명감을 고려하여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그 대신 언론인들에게 제일 먼저 ‘이 사건이 꼭 보도를 해야만 하는 뉴스인가?’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모방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며, 굳이 대중이 알 필요 없는 단순한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를 지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 있다. ‘사망원인이 자살임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자살 의심으로 보도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사법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언론이 앞서 사인을 자살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도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살문제를 보도하는 데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가이드라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자살사건 보도 역시 되도록 피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외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을 자극적으로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뉴질랜드의 가이드라인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자살예방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각국의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언론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Do Not)’과 ‘언론인이 해야 할 것(Do)’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구체적인 자살수단 언급’, ‘자살 미화’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 ‘도움기관 안내’ 등이 후자에 해당된다. 특히 미국은 몇 년 전,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방영된 인기 드라마 ‘13 Reasons Why’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경험이 있는 만큼 미디어가 촉발할 수 있는 자살문제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변화

우리나라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역사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WHO에서 제정한 <자살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Preventing Suicide : A Resource for Media Professionals)을 2004년에 번안 수준으로 도입한 이후 2013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하 ‘권고기준 2.0’)을 소개하였다. 자살예방정책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미디어와의 협력을 위한 정책적 사업수행 노력도 사실상 2013년 권고기준 2.0의 개정에 맞물려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권고기준 2.0은 사실상 최초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을 논의하여 정리한 권고기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자살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과의 협력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권고기준 2.0은 총 9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9개의 원칙은 모두 선언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당시 자살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여전히 구체적이고 선정적인 자극적 보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를테면 고(故) 최진실 배우나 고(故) 안재환 배우의 사망 당시 언론은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사용한 수단 등에 대해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그들이 사망한 방법과 경과를 상세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개하였다. 특히 고(故) 안재환 배우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된 2008년 이후 당시만 해도 자살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던 번개탄이 국내 주요 자살수단으로써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번개탄이 자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국민들이 학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권고기준 2.0의 한계는 권고기준의 내용들이 언론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져 반영되지는 못했다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권고기준 2.0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권고기준 2.0이 개정된 뒤 5년 만인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하 '권고기준3.0')을 개정하였다. 권고기준 3.0은 언론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기자협회의 추천을 통해 국내 주요 언론사에 재직 중인 현직 기자 3명이 개정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자살 사건 발생 시 최초로 이 사건을 접하고 사건기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경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경찰청 형사와 관계자도 개정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석하였다. 그 외에 자살예방 전문가와 미디어 언론학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개정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매달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권고기준 3.0 개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선언적인 기존의 원칙들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자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원칙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권고기준 3.0은 기존의 9개 원칙을 새로운 5개의 원칙으로 정리하였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2018년)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5.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6.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2.0(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2018년)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8. 자살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9. 인터넷에서의 자살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특히 권고기준 3.0은 기존의 권고기준 2.0에 들어가 있던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자살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외하였다. 이는 권고기준 개정을 위해 언론현장 종사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언론인의 기본적인 본분인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보도'를 단순히 '자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 대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위해 자살 사건을 보도하더라도 자살방법이나 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권고기준 3.0의 내용은 구성되었다.

또한, 권고기준 2.0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고인의 인격권과 자살유족들의 2차 피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할 것을 권고기준 3.0에 새롭게 명시하였다. 이는 무분별한 자살 보도를 통해 사망한 고인과 고인의 유족들이 겪을 2차 피해를 언론인들도 함께 고민하고 배려하여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권고기준 3.0이 발표된 2018년 이후 언론의 자살보도 행태는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권고기준 3.0의 개정 발표 이후 발생했던 아이돌 종현과 설리, 구하라 씨의 사망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구체적인 자살수단과 방법 등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자살 사건 보도 하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를 포함하는 보도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보도 하단의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 안내는 권고기준 3.0 개정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큰 변화였다. 뿐만 아니라, 간혹 보이는 잘못된 자살 사건 보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언론현장에서 스스로 비판하고 자성하는 목소리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권고기준 2.0이 국내의 자살예방정책에 있어서 미디어와의 영향력을 주목하고 관련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최초의 기준점이 되었다면, 권고기준 3.0은 언론현장이 자살예방을 위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함께 고민하여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권고기준 3.0의 발표 이후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들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 스스로 이뤄낸 것들이다. 기사 제목에 ‘자살’ 혹은 구체적인 ‘자살수단’을 명시하지 않거나, 자살예방 상담 전화 등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를 기사 하단에 포함하는 것들은 권고기준 3.0 발표 이후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여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4.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이후, 방향성에 대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발표 이후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그 자리를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권고기준 3.0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권장하지 않는다. 권고기준 3.0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대신, ‘숨진 채 발견’, ‘사망’ 등 사망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단순히 ‘사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언론 현장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물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점차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과거 재단의 전신인 중앙자살예방센터 시절 2년 동안(2020년~2021년) 국민패널단 50명을 매년 모집하여 자살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 당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은 찬성 40%, 반대 60% 정도로 확인되었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국민 패널 대다수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으로 힘들 때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본적으로 WHO의 자살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과 국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취지는 ‘모방자살’의 위험이 높은 형태의 보도를 피하자는 것에 있다. 만약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자살을 선택의 수단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고려했을 때 피해야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살’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역사문화적으로 ‘자살’이라는 행동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와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



독 ‘자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자극의 정도가 여타의 다른 사망 보도보다 높다는 데에서 문제의식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사망’, ‘숨진 채 발견’으로 표현해달라는 메시지를 오늘날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권고기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살사건 자체를 다루는 보도이다. 자살예방 정책을 논의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 서조차 ‘자살’이라는 표현 자체를 금기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구태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단순한 자살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이 자살사건 보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론현장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네이버>와 <다음>의 자살보도 댓글창 폐지, 자살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접근 경로 강화 등의 조치는 ‘자살’이라는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중들이 갖는 민감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포털 사이트들도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권고기준 3.0 개정 이후 4년이 흐른 지금, 미디어 환경은 많이 변화했다. 유튜브(YouTube)와 같은 채널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확산되면서 이러한 채널을 기반으로 형성된 1인 미디어 환경은 그 영향력이 더욱 커

졌으며 언론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레거시(legacy) 미디어들도 유튜브 채널 등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또한, 쇼츠(Shorts), 릴스(Reels)와 같은 매우 짧은 형태의 영상콘텐츠가 대세를 이루면서 뉴스보도 또한 짧은 분량 안에 수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이 담길 우려도 커졌다.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4.0>(이하 ‘권고기준 4.0’)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벗어나 있었던 1인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등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서 확인하였던 해외의 가이드라인 사례를 보면서 참고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테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해당 자살 사건 보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자문하여 뉴스가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일랜드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청소년들과 관련된 자살 사건 보도는 더욱 보도를 자제한다는 내용들은 권고기준 개정을 논의할 때 고민해볼 지점들이라 생각한다.

국내외의 자살보도 권고기준들은 결국 공통적으로 미디어로 인한 ‘모방 자살 위험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뉴스보도를 접하는 독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살보도를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권고기준 4.0의 개정은 단순히 권고기준의 내용의 개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뉴스보도를 최종적으로 접하고 소비하는 독자들인 국민들도 함께 그 취지에 공감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개발’ 등의 노력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담당자로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의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돌이켜보면 자살보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한 정답은 없다. 모든 자살 사건은 저마다의 맥락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인식과 감수성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도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언론 현장에 강요했다면 지금과 같은 변화는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들은 결국 언론현장의 자발적인 공감과 협력에 의해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 현장에서



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내용에 담겨야만 한다.

권고기준 3.0 이후에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새롭게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언론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간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참고 문헌

- Samaritans (2020). Samaritan's media guidelines for reporting suicide and online resources. URL: <https://www.samaritans.org/about-samaritans/media-guidelines/>
- Deutsche Depressions HILFE, Medien und Suizid : Empfehlungen zur Benichterstattung über Suizide. URL: <https://www.deutsche-depressionshilfe.de/presse-und-pr/berichterstattung-suizide>
- T. Niederkrotenthaler & G. Sonnek (2007).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ume 41, Issue 5, Assessing the Impact of Media Guidelines for Reporting on Suicides in Austria :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 Ministry of Health (2021). Media Guidelines for Reporting on Suicide (<https://www.health.govt.nz/publication/media-guidelines-reporting-suicide>)
- 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 Recommendations for reporting on suicide. URL: <https://reportingsuicide.org/recommendations/>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LIVE LIFE : An implementation guide for suicide prevention in countries.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Preventing suicide : A resource for media professionals.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Regional strategy on preventing suicide.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Suicide in the world.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2023년 자살예방백서.

02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본 언론의 자살보도

김정민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장,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1. 들어가며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질병, 노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많은 죽음 가운데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사례는 극소수다. 부고 기사를 제외한다면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죽음은 대개 불의의 사고, 타인에 의한 살해처럼 매우 드물고 예기치 못하게 생명을 잃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전해지는 또 다른 죽음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자살’이다.

2017년 미국에서 저널리스트 50명을 대상으로 자살을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심층 인터뷰한 결과¹⁾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자살을 교통사고나 화재 사건과 같이 예외적인 사건·사고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널리스트들이 살인이나 자동차 사고, 토네이도나 폭발로 인한 죽음을 취재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는 것과 달리, 자살 사건은 언론사의 내부 가이드라인, 기사가 미칠 영향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취재·보도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2004년 <자살보도 윤리강령>²⁾ 제정 후, 자살보도가 또 다른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언론계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10월 31일 발표한 ‘자살 관련 보도 인식조사’ 결과³⁾를 보면 응답자의 60.3%가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국내 언론의 자살보도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자살보도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살보도와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보도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사항을

1) Beam, R. A., John, S. L. & Yaqub, M. M. (2018). "We Don't Cover Suicide...(Except When We Do Cover Suicide)" A case study in the production of news. <Journalism Studies>, 19(10), pp.1447-1465.

2) 2004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하였고, 이 내용을 재정비해 2013년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다. 현재는 2018년 발표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 적용되고 있다. (참조: 한국기자협회. URL: <https://journalist.or.kr/>)

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10. 31).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인식 조사. <미디어 이슈>.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심의해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언론보도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정권고는 법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보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⁴⁾ 이러한 측면에서 자살보도에 관한 시정권고는 자살자 및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베르테르 효과’로 알려져 있는 모방 자살(copycat suicide) 예방 등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법익 침해의 내용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담겨 있는데,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자살 보도)

-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처음 자살보도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1989년⁵⁾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참혹한 자살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1996년 한 차례 심의기준 개정⁶⁾이 있었지만 기존

4) 양재규 (2022). 슬기로운 시정권고 활용법: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시정권고 제도. <언론중재>, 2022년 가을호 (통권164호), pp.35-39.

5) 시정권고 심의기준 (1989. 10. 5. 개정)

3.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침해

(4) 자살 또는 타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공표하였을 경우

6) 1996. 12. 13. 개정

의 내용에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언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정도였다.

자살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 현재와 같이 구체화된 것은 2004년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급증하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는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툰 정도가 되었다.⁷⁾ 자살률 증가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며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2004년 정부는 5년 단위의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의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공동 발표하면서 미디어가 자살을 다룰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살보도에서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과 유형을 선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반영했다.⁸⁾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자살보도의 유형은 크게 5가지다. 첫째 자살자(자살미수자, 자살로 추정되는 자 포함)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둘째 자살 장소나 방법,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묘사하는 경우, 셋째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공개하는 경우, 넷째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경우, 다섯째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경우다. 첫 번째 유형이 자살자 및 유가족의 명예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머지 유형들은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두 차례 추가 개정되었는데 2005년 자살자의 범주에 ‘자살미수자’를 포함⁹⁾하고, 2008년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의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¹⁰⁾이었다.

7) 안혜민 (2023. 4. 27). [스프] 미디어는 자살률을 증가시켰을까? [마부뉴스] 데이터로 보는 대한민국의 자살. <스브스뉴스>. 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7027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8)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p.240.

9) 2005. 7. 22.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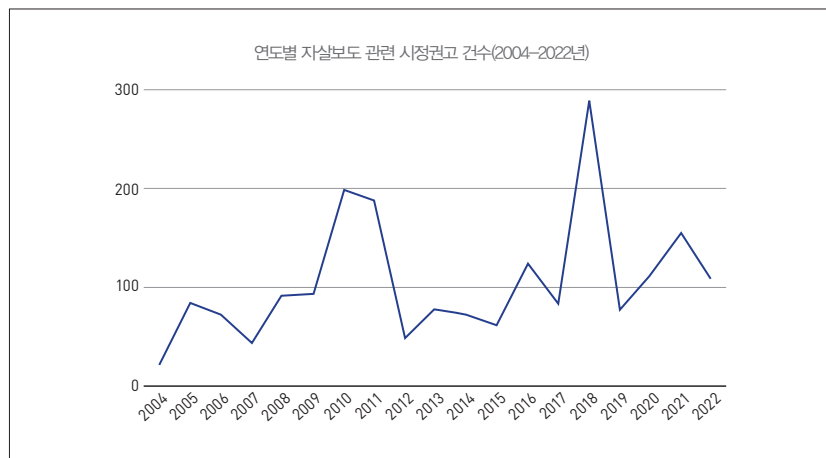
10) 2008. 3. 18. 개정

3.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 변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1981년 이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모두 2,130건으로 전체 시정권고 건수(16,557건)의 약 13%를 차지한다.¹¹⁾ 이 가운데 1996년 4건, 1998년 1건을 제외하면 모두 2004년 이후의 보도들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살률이 높지 않았고 시정권고 심의기준 역시 자살방법이나 자살에 사용된 약물명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언급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에도 두 자릿수를 넘지 않았던 시정권고 건수는 2010년 199건, 2011년 189건으로 급증했다. 이후로는 줄곧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 287건으로 자살보도와 관련해 역대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이 있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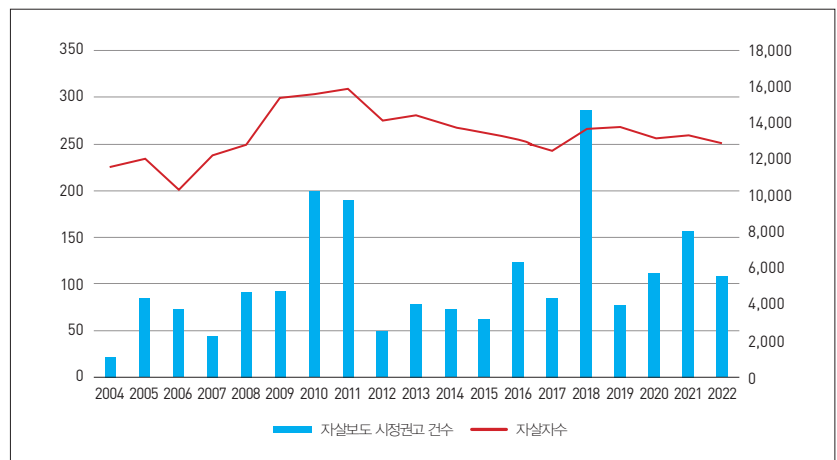
자살은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권고 결정의 증가 또는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시정권고 결정이 유독 많았던 시기에 나타난 몇 가

11)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시 피해자 및 제3자가 시정권고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심의 제도'가 일시적으로 도입되어 몇 년 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 2월 6일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제3자 신청심의 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후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체심의에 따른 시정권고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언급한 시정권고 건수는 모두 자체심의를 대상으로 한다. 연도별 시정권고 건수 등의 수치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정권고 의결현황 및 매년 발행하는 〈시정권고사례집〉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지 특징적 변화를 통해 자살보도 시정권고 건수 증감에 미친 요인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살률의 변화다. 연도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와 국내 자살자수를 비교해보면 그 증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에 시정권고 결정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예컨대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던 2010년과 2011년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각각 31.2명, 31.7명으로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해이며, 가장 많은 시정권고가 내려졌던 2018년의 경우도 자살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1천 명 이상 증가한 때였다.

〈그림 2〉 연도별 자살보도 시정권고 건수와 자살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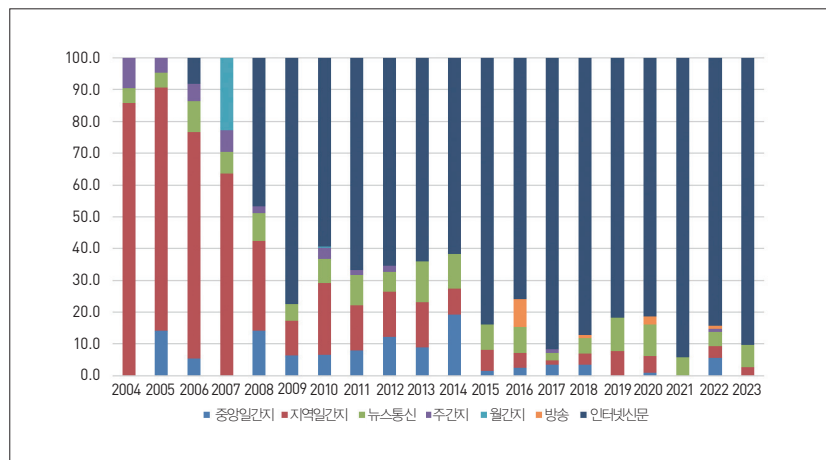
한편, 자살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던 시기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던 때이기도 하다. 2010년에는 작가 겸 방송인 최윤희 씨, 2011년에는 배우 최진실, 최진영 씨가 잇따라 사망했고,¹²⁾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건수를 기록한 2018년에는 샤이니 종현, 정치인 노회찬 씨가 세상을 떠났다. 특히 샤이니 종현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사망 추정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레지던스 프라이팬에서 갈탄 발견’, ‘친누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SNS에 의미심장 글’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속보 경쟁이 이어지면서 총 228건의 관련 보도에 대해 시

12) 김창룡 (2010). 자살보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¹³⁾

시정권고 결정의 증가는 심의대상 매체 변화에서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대상매체는 일간지가 대다수였지만 2009년부터는 인터넷신문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무렵부터는 인터넷신문의 비율이 80%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살보도뿐만 아니라 전체 시정권고 결정 대상매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인터넷신문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한 매체 간 경쟁 심화, 특히 소규모 운영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저널리즘 교육 기회 부재 등은 시정권고 결정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¹⁴⁾

〈그림 3〉 연도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대상 매체 비율



4. 시정권고 사례로 본 자살보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살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정을 권고한 지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내 자살보도는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을까? 자살보도와 관련한 시정권고 사례들을 크게 세 가지 위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그 변화 양상을 개별사례¹⁵⁾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3) 2018년 1월 시정권고 의결현황 및 언론중재위원회 (2019). 〈2018년 시정권고 사례집〉 참조.

14) 양재규 (2022) 앞의 글, p.41.

15) 시정권고 심의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도별 〈시정권고 사례집〉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시정권고〉 자료실에 게시되는 월별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한 각종 간행물 수록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1) 자살자 신원 공개

자살보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위반유형은 자살자(자살미수자, 자살로 추정되는 자 포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자살자 및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자살자의 성, 나이뿐만 아니라 직장명, 직책이나 직급, 과거 이력 등 자살자 또는 유족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살자 신원공개 기준 위반 사례는 특히 시정권고 대상매체 중 지면신문의 비중이 높았던 2009년 이전의 보도들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자살 사건이 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기사의 일부로 다뤄졌기 때문인데, 형사사건을 비롯해 일반적인 사건·사고 보도에서 익명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에 아래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지 등 자살자의 사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 17일 오전 6시경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 ○○리 ○○○번지에 거주하는 김모(60세)씨가 - (중략) - 자살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김씨는 신병을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은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¹⁶⁾

사건·사고 기사에서 익명보도 원칙이 일반화되고, 개인의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의 신상이 언론보도에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인터넷신문 등에서 자살자에 대한 사적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법익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 한 예로 2015년 모 인터넷신문은 자살로 추정되는 일가족 변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찰 내부 수사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을 사진으로 촬영해 그대로

¹⁶⁾ 2005자심247 결정. 원 보도에는 상세 주소지가 모두 공개되었으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였다. 이후 사례에서도 필요한 경우 기사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다.

게재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자살자 가족의 성명과 나이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자살자의 유서 전문 등이 담겨 있었다.¹⁷⁾ 이러한 사적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 머물며 고인은 물론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자살자 신원공개는 시정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위반유형이다.

한편,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이 커진 2009년 이후의 시정권고 결정 사례 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연예인 주변 인물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 아님에도 유명인과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사적 정보들을 과도하게 보도한 경우가 다수였다. 예를 들면 ‘연예인 ○○○의 매니저’¹⁸⁾, ‘드라마 □□ 제작사 대표’¹⁹⁾, ‘탤런트 △△△의 남편’²⁰⁾, ‘○○○ 방송국의 <□□□□> 프로그램 막내 작가’²¹⁾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연예인의 이름 등을 제목에 내세워 자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인 지인의 자살 기사는 수십 개의 인터넷 매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는 패턴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이는 인기검색어를 이용해 클릭을 유발하는 연예 저널리즘의 경쟁적 보도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²²⁾

최근 들어서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나 유튜브(YouTube) 활동 등을 활발히 하며 인지도를 얻게 된 일반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알려진 일반인의 사생활을 연예인과 같이 보도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단지 미디어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공적 인물처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자살보도의 경우, 고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일반인의 자살 소식을 전하며 성명, 나이, 근무처, 직장, 직위, 직급, 근무부서 등의 신상정보를 언급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몇몇 매체들은 당사자의 인스타그램(Instagram) 계정 및 게시물로 올렸던 사진까지 캡처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

17) 언론중재위원회 (2016). <2015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288~290(제2015-206호).

18) ————— (2011). <2010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448~450(제2010-9~43호).

19) ————— (2011). <2010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468~469(제2010-151~169호).

20) ————— (2010). <2009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1052,1054~1055(2009자삼158~161, 169~201호).

21) ————— (2009). <2008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956~957(2008자삼154~184호).

22) 남재일 (2013). 연예저널리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론중재>, 2013년 여름호(통권127호), pp.76~87.

중재위원회는 단 한차례 방송에 출연했을 뿐인 일반인의 신상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한 것은 자살자 신원 공개 관련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²³⁾

2)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상세 묘사

『(전략) 경찰 관계자는 “종현이 발견된 레지던스에 있는 ○○○○에 ○○이 타고 있었다. 연기를 들이마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석탄의 한 종류인 ○○은 건설현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쓰인다. 종종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다 질식사고가 난다. (이하 생략)』²⁴⁾

『(전략) 숨진 A씨는 키 185cm, 몸무게 116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지병도 없었다. 부검 결과사인(死因)이 될 만한 내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는 위장과 혈액, 간 등에서 검출된 ○○○ 성분. A씨의 혈중 ○○○ 농도는 L당 ○○mg에 달했다. 혈중 ○○○ 농도가 L당 ○○mg 이하 일 때 안전한 수준이고 ○○mg 이상이면 치사량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A씨는 치사량의 ○배 가까운 ○○○에 중독됐던 셈이다. A씨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갈색 유리병과 컵에서도 국과수 감식 결과 ○○○ 성분이 검출됐다. A씨가 죽기 한 달 전 친구들에게 “해외에서 산 약이 있는데 사람을 아주 빨리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하 생략)』²⁵⁾

위 사례들은 자살 방법이나 자살에 사용된 약물명, 치사량 등을 상세히 보도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다. 시정권고 심의기준과 자살보도 권고 기준 등에서 자살 장소와 방법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까닭은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모 대기업 직원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며 투신한 건물 전

23) 언론중재위원회 (2022). <2021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pp.54-55(제2021-295호).

24) ————— (2019).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p.63(제2018-22호).

25) ————— (2016). <2015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291(제2015-227호).

경 및 주변 사진들을 게재한 사례²⁶⁾, 2021년 성전환 수술로 강제전역 조치된 모 하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자택 내부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사례²⁷⁾, 2022년 수원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다루면서 자택 내부 모습을 공개한 사례²⁸⁾ 등과 같이 자살 장소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전하는 경우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던 사례는 올해 봄, 한 10대 청소년이 서울 강남의 고층건물에서 자신이 추락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한 일일 것이다. 당시 촬영된 영상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전파 경로 가운데에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매체는 생중계 영상 중에서도 자극적인 부분만을 캡처해 기사화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총 19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²⁹⁾

3) 자살 동기 단정 보도

자살은 여러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럼에도 특정 사안을 자살 동기로 단정해 제목에 강조하는 방식의 보도들은 오랜 시간 반복되고 있다.

2022년 7월 전남 완도 인근 바다에 빠져 숨진 일가족 사건의 경우, 실종 당시부터 사망 사실이 확인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량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상당수의 기사는 코인 투자 실패를 자살 동기로 단정하거나 블랙박스에 담긴 가족들의 대화를 언급하며 자살 실행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자살보도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나서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콘텐츠 양산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³⁰⁾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해당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루나 코인’ 등을

26) ————— (2021). <2020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p.51(제2020-447호).

27) ————— (2022). <2021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p.56(제2021-462호).

28)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22년도 제9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2-935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195&b=B_1_6&bn=2991&m=read&nPage=2&cate=PD03&f=TITLE&s=

29)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23년 제4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3-393~411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8&b=B_1_6&bn=3077&m=read&nPage=1&cate=PD03&f=TITLE&s=

30) 박효순 (2022. 7. 3). 자살예방협회 “자녀살해 후 극단적 선택은 중대 범죄” 성명서.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7030739001>

언급하며 투자 실패가 자살동기인 것처럼 단정한 보도에 시정권고를 결정했다.³¹⁾

이밖에도 '상사·동료와의 갈등', '성적 비관', '생활고', '우울증', '사업 실패' 등의 사유가 자살에 이른 원인인 것처럼 지목하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 사건 보도에서 유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자살을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보도의 대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2020년 한 BJ의 자살 사건³²⁾, 최근 사망한 유튜버 김용호 씨와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 표예림 씨 관련 보도³³⁾ 등에서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나 음성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유명인 자살보도에서 권고기준이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가 비추는 화려하고 밝은 모습만을 마주했던 일반 시민들에게 유명인의 자살은 관심과 파급력 면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나가며: 자살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 예방 가이드, '시정권고'

「시정권고 심의기준」 외에도 자살보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양하다. 자살보도와 관련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기사 작성 지침을 담고 있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비롯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³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³⁵⁾ 등 자율규제기

31)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22년 제8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2-800~831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8&b=B_1_6&bn=2972&m=read&nPage=2&cate=PD03&f=TITLE&s=

32)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20년 제8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0-501~531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8&b=B_1_6&bn=2716&m=read&nPage=5&cate=PD03&f=TITLE&s=

33) 언론중재위원회. 2023년 제11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3-915~987호, 제2023-988~1008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8&b=B_1_6&bn=3144&m=read&nPage=1&cate=PD03&f=TITLE&s=

34)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 (자살보도의 주의)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35)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범죄 및 자살보도) ⑥ (자살보도)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유명인 등의 자살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5.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6.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구의 윤리규정이나 심의기준에도 자살보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자율규제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자살보도 기준들은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내용에는 기사 작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특정 단어의 배제나 선택 등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대신 ‘사망’, ‘숨지다’와 같은 대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동반 자살’은 ‘살해 후 자살’과 같이 범죄로 인식될 수 있게 보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도 자살보도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살보도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과 포함시키면 좋을 내용들을 ‘자살보도를 위한 실천요강’으로 정리해 권장하고 있다.³⁶⁾

이러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자살보도와 관련해 다소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정권고 제도가 마련된 법적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정권고의 근거가 되는 언론중재법 제1조는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이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심의는 자살자 및 유족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 구

36)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URL: http://www.ikpec.or.kr/sub/sub_0106-1.asp) 참조.

성원들이 자살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법익 침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는 언론이 ‘자살’이라는 사회 현상을 다룰 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 보호라는 가치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대신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자살자 신원공개) 및 제2호(자살장소, 방법, 경위 묘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 유명 연예인 등과 같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죽음에 관한 사안은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권고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들도 있다.³⁷⁾ 이처럼 시정권고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등 자율적인 규제 장치들을 보완하는 한편, 자살보도의 의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족, 친구 등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자살로 잃은 사람들을, 전지기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으로 ‘자살 생존자’라 부른다.³⁸⁾ 이는 자살이 비단 한 생명을 잃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살 사건 가운데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기록되고 알려져야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다만 그 기록의 과정에서 지금은 세상에 없는 누군가가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였음을 상기시키는 수단으로 시정권고 사례들이 적극 활용되었으면 한다. 

37) 김창룡 (2010) 앞의 글

38) 김금희 (2023. 9. 12). [동아광장] 우리는 자살 생존자로 남아 있다.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912/121150866/1>

03

최근 자살보도 주요 이슈,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언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1년 자살자 무려 13,352명, 한국은 지금 '뭉든지' 해야 하는 시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 십수 년 간 세계 1위 수준을 기록 중인 우리의 자살률은 그동안의 숏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없이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 연령대에 걸쳐 문제이지만,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약 42.2명을 기록할 정도로(자살예방백서, 2023), '심각하다'는 표현이 충분치 않을 만큼 참담한 수준이다. 더욱 걱정되는 지표는 또 있다. WHO에서 발간된 <사망률 보고서>(Mortality Database)를 우리나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에서 50대, 70대에서 80대 국민 모두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을 기록 중이란 사실이다. 예전 노인층의 자살이 상대적으로 높게 기록되며 전체 통계에 영향을 미친 시간도 있었으나, 이제 거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세계 최고의 자살률로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의 극복과 개선을 위해,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부처들은 자살 예방 혹은 자살률 감소에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올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가장 먼저 발족시킨 특별위원회는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지아, 을지대의 교수)였으며, 이는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문제를 다룬 첫 번째 사례가 되기도 했다.¹⁾ 치명적인 만성병으로 굳어진 자살률을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시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직간접 정책의 보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마련과 지자체별 위기대응 개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가동되고 있으며, 일련의 노력들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수렴되어 있다(자살예방백서, 2023). 자살론의 저자인 사회학자 뒤르켐(E. Durkheim)이 주장한 것처럼, '자살은 사회적 타살'임을 실제로 인지하며 자살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직접적 해결책들을 고안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주체들의 전방위적 노력과 역할들 가운데, 각종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자살보도의 개선 또한 존재한다(유현재·송지은, 2012). 엄연한 사회현상인 자살을 기사로 만들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며,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도가 만들어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

1) 박소연 (2023. 11. 25). "자살률, 사회의 연대/통합 대변...숫자가 아닌 사회 전체를 봐야". <머니투데이>.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409583361143>

거나 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순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물론 많다. 하지만, 선정성과 자극적 접근으로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거나, 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혹은 가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들도 존재한다(유현재, 2016). 본 글은 특히 최근 이뤄지고 있는 자살보도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가장 합리적인 자살보도의 양상을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짚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물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제언도 서술할 예정이다.

2. 디지털미디어와 연계된 자살의 증가...무차별적 보도의 일반화

언론의 입장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을 아예 보도하지 않을 수야 없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너무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살,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극도로 상세하게 전하는 보도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미디어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신종 자살’과 해당 사건을 다루는 자살보도 이야기다.

필자는 얼마 전 자신의 자살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낸 사건들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받은 적이 있다. 자살률이 독보적인 세계 1위이며, 비율로 따지면 하루에도 약 37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상황이라 해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으로 전송한 사건들은 기자와 미디어 연구자 양쪽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2023년 4월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여고생이 라이브 방송을 켜 채 투신한 사건이 있었고,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BJ 임블리가 온라인 생방송을 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다수의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망자가 사용한 도구, 전후의 구체적 상황, 망자의 자세한 신원과 주변인에 대한 정보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명시된 주요 항목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생방송 자살’을 전파했다. 필자는 최근 발생한 엽기적 사건들이 일종의 ‘풍토병’ 같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자살이 우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IT 환경에 결합하며 너무나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에, 안타까운 사회현상이 비극적으로 합해진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을 ‘미디어 연계형 자살(Media Involved Suicides, MIS)’로 부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살로 보인다.

미디어 연계형 자살의 또 다른 형태도 관찰되었다. 생방송은 아니었지만,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자살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생산하고 남기는 방식이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유튜버 김용호 씨가 자살 전 육성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표예림 씨도 자살을 시행하기 전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들은 마치 2013년 자신의 자살을 예고한 뒤 교량에서 투신한 고(故) 성재기 씨 사건에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당시에도 투신 장소에 카메라를 소지한 채 촬영에 몰두했던 언론, 너무나 세부적이며 사변적인 사항까지 적나라하게 보도했던 미디어에 대한 비판은 상당했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사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까지 제정되어 언론계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유형의 자살이 등장하는 순간 거의 모든 언론은 자살의 상세 정보들을 앞다투어 적나라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다시’ 보였다.

미디어 연계형 자살을 너무나 자세하고 자극적인 형태로 보도하는 행태는 더욱 큰 위험에 대한 선행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다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베르테르 효과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미디어 연계형 자살’이 언론에 의해 반복적으로 보도된 후, 일반인들이 유사한 유형으로 자해를 시도한 소식도 전해진 상황이다.²⁾

우려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미디어를 가장 친밀하게 사용하는 계층, 즉 청소년들에 대한 추가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지적한 것처럼,³⁾ 그동안 세계적인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던 청소년 자살률이 최근엔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와 미디어 연계형 자살의 폭증, 나아가 상당수의 언론과 미디어가 만들어 내보내고 있는 상세하고 자극적인 보도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2) 이수민·박지현 (2023. 10. 31). ‘극단선택’ 생방송한 여고생...“친구가 위험” 신고로 구사일생(종합). <뉴스1>. URL: <https://www.news1.kr/articles/?5216409>

3) 정익중 (2023. 10. 23). [국민논단] 청소년 자살마져 세계 1위 절대 안 된다. <국민일보>. URL: <https://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6333>

3. 유서 공개를 망설이지 않는 무분별한 자살보도의 폭증

전 팝페라 가수 최성봉 씨가 2023년 7월 16일 사망했으며, 사인은 자살로 알려졌다. 그는 거짓으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후원금을 받아 탕진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가 사망하기 전 유튜브(YouTube) 채널 커뮤니티에 장문의 유서를 남겼는데, 당사자가 사망 직전 메시지를 남긴 이상 관련 정보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예상대로, 다수의 언론은 그의 유서를 고스란히 대중에게 전달했다. 언론의 유서 공개는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 관련 논의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던 영역이었다.

유서에 대한 비공개는 대체로 세 가지의 이유와 배경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당연히 망자에 대한 예의, 혹은 프라이버시 차원이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라는 항목에서 보듯, 대체로 유서의 독자는 가족 구성원 혹은 밀접한 관계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최성봉 씨의 경우 대중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이 명확했기에, 어느 부분까지 언론이 공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배경은 유서에 의해 불특정 다수가 자살에 대해 공감하는 등 감성적으로 반응하며 모방을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다(유현재, 2023a). ‘사건’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시각으로 망자의 비극을 받아들이어 심리적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이 같은 우려는 언론이 일종의 ‘미필적 자살방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과 동일한 맥락이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한창현·유현재·정휘관·한택수·서영지 2018).

세 번째는,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다양한 형태의 충격을 유서 공개에 의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다. 유가족들은 가족의 자살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상실감과 무망감, 죄책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일반인에 비해 자살 시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왔다. 최성봉 씨의 경우, 그가 남긴 유서는 일부 언론에 의해 ‘전문’이 공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명확한 동의를 얻은 채 보도가 되었는지, 혹은 ‘다른 언론도 다들 그러니까’ 동의에 대한 필요마저 무시한 상황이었는지, 꼭 묻고 싶은 심정이다.

유서의 공개는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구체적 항목으로 명시된 적은 없다. 하지만 “자살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



한 자세가 필요합니다(〈자살보도권고기준 2.0〉)”,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을 통해 주요 금기 사항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엄격히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발생한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자살 사건에서 일부 언론은 고인의 유서를 ‘단독’이라며 공개, 유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자제했던 동료 언론인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유서의 공개를 자살보도 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원칙으로 여기며 대체로 준수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망자들이 디지털 형태로 남긴 유서나 최후의 메시지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현재 일부 언론은 유서만으로 거의 분석 수준의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등, 자살보도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던 시절로 회귀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준엄한 지적과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믿는다.

4. ‘극단적 선택’ 쓰지 않고 ‘자살’ 용어로 돌아가려는 언론

2023년 11월 9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사건기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도 참여했으며, 필자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4.0: 합리적 권고기준의 미래 논의”라는 제목으로 언론인들과 합리적인 자살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다. 단연 기자들의 질문과 주장이 가장 활발했던 영역 중 하나는, 현재 다수 언론이 ‘자살’이란 용어 대신 사용하는 ‘극단적 선택’ 용어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다. ‘극단적 선택’이 언론계에서 사용된 계기와 경과는 필자가 작성한 글(유현재, 2023b)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결국 ‘자살’이란 용어의 대체어로서 무언의 합의와 함께 사용된 언론의 호의였다고 믿는다. 이 같은 노력은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핀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자살’이란 용어를 아예 지양함으로써 효과를 얻었던 사례에서 기인했다.

하지만 최근 이 용어의 활용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언론인들은 더 이상 이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⁴⁾ 예를 들어 <CBS> 뉴스쇼의 진행자 김현정PD는, 앞으로는 ‘자살’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극단적 선택’은, 자살이 마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선택으로 미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자살’ 대신 다른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자살을 줄이거나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자살’ 표현을 사용하자는 미국 예일대 나중호 교수(정신건강의학)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건기자 세미나 현장에서도, ‘극단적 선택’은 자살보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그렇다고 특정한 대체 용어를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일부 기자들은 위 주장처럼 그냥 ‘자살’로 쓰면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또 다른 언론인들과 자살예방사업 실무자들은 반대의 의견을 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보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장의 경우, 언론보도에 ‘자살’을 사용하자는 것은 지난 십수 년 ‘자살’ 용어를 자제하기 위해 펼친 노력들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CBS> 권영철 대기자는 극단적 선택이나 자살이란 용어 대신, 가치 판단이 유보된 ‘사망’이나 ‘숨지다’ 등의 표현을

4) 최승영 (2023. 11. 10). “극단적 선택 표현, 자살률 감소 효과 없다는 게 학계 중론”. <한국기자협회보>. URL: http://m.journalist.or.kr/m_article.html?no=54644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괄적 합의가 가능한 결론이 나오기도 어렵고, 어찌면 단일한 용어의 사용을 ‘의결’하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자살보도 작성 시 모든 언론인이 고민할 법한 이 용어에 대한 이슈는 ‘무엇이 합리적인 자살보도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믿는다.

5. 숏폼과 유튜브가 동원된 ‘신종 자살보도’의 유행

앞서 MIS(Media Involved Suicides, 미디어 연계 자살)라는 개념으로 미디어가 변수가 되어 발생하는 형태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들이 대중에게 극도로 상세하게 전달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살보도를 통해 일종의 ‘교육적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함께 대거 등장한 신종 자살보도의 유행이 있지 않을까 싶다. 숏폼(short-form)을 포함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의 급속한 유행과 AI에 딥페이크(deepfake)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애용 중인 유튜브 또한 연결되며 아주 새로운 형태의 자살보도들이 셀 수 없이 등장하고 있는 판국이다.

올해 들어 자살로 사망한 연예인과 유명인에 대한 소식은 예외 없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자살의 동기와 전후 사정, 그리고 망자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망했으며, 또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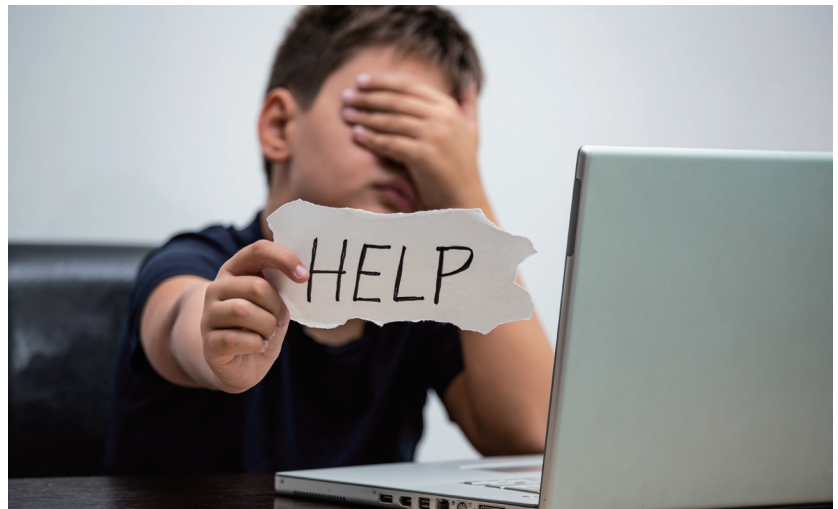
편 상황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누구와 갈등이 있었고, 사망 전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최후에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등 거의 일지 수준으로 정리해서 보도화한 것이다. 정보의 종류만 봐도 막대한데, 더욱 심각한 점은 일련의 정보를 담은 영상과 사진, 망자의 예전 모습과 CCTV 자료들이 재빠르게 편집되어 전 연령이 너무나 쉽게 접하는 숏폼 등으로 제작되어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숏폼 콘텐츠들은 결국 사건의 전말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을 소재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반복적으로 소비될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숏폼들은 사이버렉카⁵⁾를 포함한 유튜버들이 생산한 콘텐츠는 물론, 기성 언론이 만든 보도의 일부까지 활용하여 짧지만 파괴력 있는 콘텐츠가 되어 제한 없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숏폼을 만들거나 퍼다 나른 주체들을 ‘언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겠다. 하지만, 분명히 일부 언론사가 원천적으로 생산한 콘텐츠를 활용해 숏폼이 재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에 자살보도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유튜브는 갈수록 고도화, 일반화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앱으로 등극해 있다.⁶⁾ 약 44%의 미디어 소비자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으며 자살보도 또한 예외 없이 유통되고 있는 중이다. 합리적인 자살보도를 위한 논의에서 이제 유튜브와 유튜브가 만드는 다수의 부작용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충분히 보인다는 뜻이다. 최근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여타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딥페이크, 메타버스(metaverse)와 가상 모델, 라이브 방송과 멀티 모달(multi modal) 등 주

5) 사이버렉카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거짓 이슈를 만드는 악성 유튜버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 등 문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6) 최은수 (2023. 7. 26). **韓도 이미 구글전하...유튜브에 월 평균 970억분 쓴다.** <뉴스시스>. URL: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26_0002390936



요한 주제와 화두들이 또 다른 유형의 '신종' 자살보도와 연결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에 의한 유서가 떠돌고 더욱 생생한 라이브 방송으로 자살이 증계되며 AI가 더욱 자극적인 자살보도나 콘텐츠를 마구 만들어 퍼뜨리는 환경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이제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보도로 제작하여 사회에 제공하는 콘텐츠가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의해 증폭되며 또 다른 자살에 기여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방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6. 무엇보다 언론인들의 적극적 노력 있어야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재정비를 포함하여 향후 언론(인)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 권고기준의 새로운 방향설정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보다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을 만들자고 추천해 본다. 기존의 <자살보도 윤리강령>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대부분 항목들은 말 그대로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지침'의 형태였다. 물론 구체적인 항목을 어긴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란 자율적 용어가 쓰이긴 했지만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살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Not To-do-list' 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자살보도 윤리강령>이 등장한 지 무려 20년이 경과한 시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 제정된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언론인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항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특위 정책 제안에서 비롯되어 최종 결정된 자살예방상담 통합번호 ‘109’를 모든 자살보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도 가능해 보인다는 뜻이다.

이와 연계하여, 기존 일부 자살보도들이 기사 말미에 포함하고 있는 “우울증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등의 메시지를 언론사의 판단에 의해 효과적으로 편집하여 대중의 눈에 더욱 잘 띄게 배치해 달라는 권고 또한 해봄 직하다. 기사의 뒷부분이 아니라 기사의 시작 부분에 예방 메시지를 위치시켜 달라는 제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언론인들은 기사를 통해 대중의 인식과 시각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특히나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이며, 웬만한 곳에서는 네트워크와 곧장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상당 부분 언론이 생산하는 기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다.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로 부와 지위를 점한 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필자는 현 미디어 환경을 근거로 ‘프레스 오블리제(Press Oblige)’ 또한 충분히 의미 있는 개념이 아닐까 한다. 사회 내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아젠더 세팅(agenda-setting)은 상시로 발생하며, 현대에서 의제 설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군은 단연 언론(인)이기 때문이다

다. 극단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자살률 최고라는 위기까지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인)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예전에 없던 자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전하는 자살보도 또한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자살 관련 보도와 그 외 미디어 콘텐츠가 또 다른 자살에 대한 부추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김은이·송민호·김용준, 2015; 유현재, 2013).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살보도들이 초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을 파악하여 논의함으로써, 최대한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는 자살보도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되길 간곡히 희망해 본다. 

참고 문헌

- 김은이·송민호·김용준 (2015). 신문의 자살보도가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살보도 내용과 웹 검색 활동의 동적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3), pp.94-123.
- 유현재·송지은 (2012). 미디어의 성격별, 자살관련 보도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인터넷 신문과 전통적 신문의 차이 비교. <보건사회연구>, 32(2), pp.427-467.
- 유현재 (2023a). 자살 예방과 언론, 미디어의 역할: 사회적 연대강화를 위한 제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예방 세미나>, 2023. 4. 28.
- 유현재 (2023b. 7). 자살보도 극단적 선택 용어 사용 적절할까? 죽음, 결코 선택의 대상 될 수 없어. <신문과 방송>.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pp.46-50.
- 유현재 (2016). 효과적, 현실적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위한 탐색적 연구(An Exploratory Study for Establishing More Realistic Media Guidelines for Reporting on Suicides: A Case Study of S. Korea, Which Has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for 13 Consecutive Yea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3), pp.158-178.
- 유현재 (2013. 9. 10). 묻지마 자살보도, 베르테르 효과 악순환. <더피알>. URL: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3>.
-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2023 자살예방백서>
- 한창현·유현재·정휘관·한택수·서영지 (2018). 방송 뉴스 자살 보도 시 미화법 사용과 배경 설명이 대학생의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7(1), pp.89-120.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사적 제재는 정당인가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촉법나이트’를 통한 복수?

2023년 7월 18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 일로 교권의 위기와 학부모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교사 집단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결집했다. 교실의 붕괴를 걱정한 많은 사람들은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같은 해 9월 대전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0년 경력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문제의 학부모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고소 내용은 ‘학생이 교실에서 지우개를 씹고 있는 것을 목격한 교사가 학생에게 ‘뽀뽀 씹었다’며 다른 아동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을 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학생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친구와 장난을 치다 친구의 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한쪽에 몰아세운 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혼냈다’ 등이었는데, 학부모가 문제 삼은 교사 행동이 정상적인 생활지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는 더욱 더 무고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 학부모를 규탄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해당 교사는 당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어 더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생전에 대전교사노조에 보낸 교권상담신청서를 보면 “1학기 내내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힘들게 해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수업을 방해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때리기도 해 무기력을 느끼게 했다. 결국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내게 됐다. (중략)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지만 묵살되었고 결국 우울증이 생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변화는 느렸고 미미했으며, 심지어 없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2023년 7월 18일의 사건은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하고 그 전말마저 속 시원히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유아무야될 것을 걱정했다.

이때 ‘촉법나이트’라는 SNS가 영웅처럼 등장했다. 그는 대전 교사의 가해 학부모의 신상, 그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물론, 자녀 사진까지도 공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냈다. 촉법나이트는 우리가 가려왔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긁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공적 시스템은 우리의 감정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뜻의 방향이 권력자들에 의해 오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마저 스멀스멀 생겨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촉법나이트가 가리키는 방향은 선명했고 빨랐다. 드디어 가해 학부모를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촉법나이트가 알려준 가해 학부모의 가게에 찾아가 항의성 포스트잇을 무수하게 붙이고 계란을 투척하는 방식으로 가해 학부모를 응징하였다. 가게는 너털너털해졌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맹점 본사 인터넷 사이트에 항의글이 올라왔다. 결국 그들은 가게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촉법나이트가 가해 학부모의 자녀가 전학을 간 사실을 공개하자, 전학 간 지역에서는 이들의 전학을 성토했다는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었다.

‘디지털교도소’의 명과 암

사인에 의한 공개 행위는 ‘촉법나이트’ 이전에도 있었다. 바로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가 그것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였던 인터넷 사이트이고,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1) 김미성 (2023. 9. 9).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대전교사 생전교권침해 기록공개. <노컷뉴스>.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465> (2023. 11. 25). 최종검색

이들 사이트의 공통점은 ‘아주 나쁜’ 놈들의 신상정보를 ‘확실하게’ 공개한다는 점이었다. 먼저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2020년 대한민국은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N번방은 주로 어린 여성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하여 나체 등 굴욕적인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들 사진과 신상을 ‘텔레그램(Telegram)’ 등에서 유포한 사건이었다. N번방 사건 직전에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에 대해 18개월 징역형만 선고되고 미국 송환도 불허되었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은 N번방에 대해서도 낮은 처벌이 이루어질까봐 걱정하였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남는 데 반해 가해자들은 짧게 감방에 다녀오면 된다는 사실을 부당하게 여겼다. 디지털교도소는 이러한 사람들의 걱정과 욕망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는 자신들의 운영목적에 대하여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범죄인의 신상정보는 사진,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평생 인터넷에 박제될 터였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사실검증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이를 위한 운영진의 의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는 등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게시가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허위사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채정호 카톨릭대 의대교수도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었다. 2020년 6월 26일 그의 신상과 전화 번호, 그로 추정되는 사람이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려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이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됐다. 채교수의 휴대폰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쏟아졌다. 채교수는 2020년 7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통하여 그의 결백이 입증되었다.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은 조작된 것이었다. 이후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교도소가 아니라 정말 교도소에 사는 것 같았다”며 “내 가족과 지인은 물론 내 직장 동료, 내가 속한 학회와 내가 속하지 않은 학회에도 알려졌다. SNS의 전파력이 정말 무서웠다. 내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목사님도 걱정을 하셨고 아는 신자분들도 계셨다. 내가 치료를 했던 환자들로부터 ‘교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정말 살기 싫다’는 문자도 받았다. 제가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했다.²⁾

디지털교도소 게시로 인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7월 대학생 A가 지인능욕(지인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행위)을

2) 박태인 (2020. 9.8). [단독] 디지털교도소 캡처는 가짜였다...억울한 교수의 반격.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6941> (2023. 11. 25). 최종검색

했다며 그의 얼굴 사진과 학교, 전공, 학번,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A는 지인능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무죄를 입증하기도 전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2020년 9월 끝내 자살했다. 디지털교도소가 벌주는 방식은 명징하고 즉각적이었지만, 검증이 부족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건이 논의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조치(거부, 정지 또는 제한)를 명할 수 있다. 불법 정보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된다.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사이트 등 전형적인 불법사이트와 달리 디지털교도소는 공익성과 불법성이 공존하였기 때문에 심의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 제67차 정기회의(2020. 9. 14.)에서는 전체사이트 접속차단은 하지 않고 문제가 된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70차 임시회의(2020. 9. 24.)에서는 최소규제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불가능하고, 디지털교도소가 교도의 목적을 하고 있지 못하며, 공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보아, 전체접속 차단이 결정되었다.³⁾ 또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⁴⁾

적법과 위법의 경계, '배드파더스'

이른바 사적 제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심스럽게 운영이 된 쪽은 '배드파더스'였다.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개설되었다. 양육비 이행판결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 직장, 주소 등을 공개하였는데, 사이트 공개 전에 먼저 미지급자에게 연락을 하여 양육비 지급을 할 시간을 주고,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운영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였고, 이로 인한 어떠한 사익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의 방식은 효과적이었다. 배드파더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고, 미지급 부모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곧바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도 690건에 달했다고 한다.

3) 송채은·윤석민 (2021).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는가?: '디지털 교도소'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8권 1호, p.116 및 p.125.

4)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범행 외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박공간 개설 방조 범죄가 있어, 형소심에서 병합 심리되어 4년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결국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간 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차단을 요청하고 형사고소도 하였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배드파더스에 대해서 공익성을 인정하고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운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적시한 사실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심은 ①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이고, ② 운영진이 대가를 받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해왔고, ③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비하, 모욕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④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⑤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데다가, ⑥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적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배드파더스는 허용되는 사적 제재로서, 일반 사인의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다음은 2심 판결문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양육비 채권의 중요성과 사인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한 신상정보공개의 허용 여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숙고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중요성 내지 심각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인 또는 사적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차원을 달리해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허용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적 제재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이트에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제도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특정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얼굴 사진 등까지 게시할 필요가 없다. 얼굴은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가기관의 경우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서 그 사진을 공개하는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새로이 마련된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에도 얼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현행제도에 대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나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나름대로 조화롭게 절충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된 것임이 고

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그 접근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 광역성, 피해회복의 곤란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배드파더스 운영진에 대해서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들을 반복, 계속해서 올리는 공간을 개설하는 문제

결국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등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는 ‘공간’을 만들 권한을 개인에게 어떻게 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로 바라보아야 한다. 배드파더스에 대해 ‘미투운동’과도 유사점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미투운동’ 역시 한 사람을 특정하여 가해사실을 폭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1차적 효과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각성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것처럼 배드파더스 역시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중에게 각성시켜 양육비 미지급 관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두 개는 1차적으로 명예가 훼손될지언정 공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비슷하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가 미투운동과 완전히 구별되는 점은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를 수집, 망라하는 ‘장(場)’을 만들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유포시킴으로써 스스로 ‘히어로’가 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히어로’는 ‘법’보다 화려하고 신속하며 통쾌하다. 심지어 법은 사회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때도 많고 권력자에 붙어 정의롭지 않은 판단을 하는 도구로 이용될 때도 있다. 이럴 때 헤성처럼 등장하는 히어로에 대중들은 환호한다. 훌륭한 인성과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언제나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준다면야 법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히어로는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히어로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학습해왔다. 법 없이 사적 복수로서 응징하던 고대 시대를 지나, 신이 절대 진리였던

5) (사)오픈넷 (2023). <‘배드파더스’ 심의에 대한 의견서> 4면. URL: <https://bully.kr/BTMNarV> (2023. 11. 27). 최종검색

중세시대를 거치고, 짐이 곧 국가이던 왕권시대를 마지막으로 건너오면서, 현재의 체계, 이른바 사회적 계약인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공정성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물론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 당연히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개인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의 표현도 공공적, 사회적, 객관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또한 헌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러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며 표현의 자유가 향유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강구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있는 정보이지만,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는 반드시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이에 범죄보도에 있어 익명보도가 원칙이고, 공인의 공익성 있는 보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한다. 또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혐의보도를 하여야지 단정보도를 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국가기관은 성범죄자,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정해진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공개하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미지급자의 초상을 제외한 이름, 도로명까지의 주소를 공개한다. 그런데 선의와 공익성을 갖춘 개인이면 그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간단히 뛰어넘어 이를 배제시킬 권한이 있는가. 그렇다고 답한다면 개인은 언론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물론 정치적인 표현이라든가 선정적인 표현과 같은 영역에서는 개인에게 좀 더 자유로운 운신의 폭을 허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순전히 타인의 범죄 행위나 위법 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보다 개인에 더 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개인이 인터넷 권력을 가질 때는 기존 언론의 파급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과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는 강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응징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 아동을 학대한 자 등이 차례로 인터넷에 정리되어 유포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범행 수위의 악행에 대한 이상한 서열 가르기로 변질될 여지마저 있다. 또한 앞서 살핀 것처럼 부족한 검증으로 올라온 허위사실 게시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 점, 사적 제재를 통해 지목된 자(어떨 땐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까지)를 주홍글씨로 낙인찍는 복수가 사회적으로 건강한가에 대해서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트너스

가 내린 처방은 통과하였고, 운영진의 의도는 비교적 선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준 부분도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독배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과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인터넷 초창기였던 1990년대 중반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콘텐츠 관리(contents moderation)’ 업무는 수작업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게시판 형태가 주를 이루던 당시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위법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뒤 2023년의 인터넷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포털로 불리는 다기능 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하여 페이스북(Facebook), 엑스(X, 구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등 소셜미디어와 유튜브(YouTube)까지 하나의 형태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더구나 챗GPT, 미드저니(Midjourney) 등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급성장은 디지털 환경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로 콘텐츠 관리를 행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공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의견을 표명하도록 콘텐츠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음란 등 위법한 게시물과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초래하는 유해한 게시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deepfake)까지 위험한 콘텐츠들로 지뢰밭이 되어버린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사업자들이 콘텐츠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 제정하여 플랫폼의 유형, 규모, 행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촘촘하게 부과하고 있다.¹⁾ 「디지털서비스법」은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적 보장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 광고, 추천 시스템에 있어서의 투명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정책적 방향으로 삼은 미국에서는 플랫폼사업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데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이는 후술하는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제230조의 영향도 크지만, 자국의 기업이 인터넷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성장을 선택한 정치적 결단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플랫폼기업 규제와 관련된 정치적, 학술적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1년 발생했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다.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합헌 논쟁

2021년 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D. Trump)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이 의회로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가 폭력적 시위자들에게 점거당한 모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투쟁할 것을 촉구했고 시위대를 애국자라고 두둔했다. 트위터는 추가적 폭력선동의 위험을 막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Snapchat), 트위치(Twitch), 유튜브도 트럼프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유튜브 계정도 대선 관련 거짓 주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광고를 통한 수입창출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당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이러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플랫폼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구 정지시키거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위험한 게시물을 플랫폼 기업이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필요한 조치라고 볼 것이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사기업이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계정을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1) 김민정·최요섭·김유향 (2023). EU 디지털서비스법의 뉴스미디어 분야 합의 분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러한 논쟁 속에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는 소셜미디어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관리(contents moderation)’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1년 5월 플로리다 주(州)에서 통과된 법률(Senate Bill 7072)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정치인들의 계정을 차단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같은 해 11월 텍사스 주(州)에서도 대규모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막고 콘텐츠 관리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규정한 법률(House Bill 20)을 만들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보수적 목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왔다고 해당 주법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위험한 게시물을 플랫폼 기업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통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법률의 합헌성은 소송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데, 플로리다에서는 당해 소셜미디어법이 기업의 자율적 콘텐츠 권한을 제한하는 일종의 검열규정이라고 판단하여 효력정지를 판결한 바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도 해당 법률들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소셜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2024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대한 지속적 논란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오랫동안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을 다양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온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90년대 초중반에 내려진 두 개의 판결²⁾이 모순적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판결에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을 행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반면에, 두 번째 판결에서는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자는 관리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즉, 게시물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인터넷사업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방치할 것을 우려한 미국 의회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을 면책시키는 법안인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채택하게 되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 (c)(1)항은 “컴퓨터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콘텐츠 제공자가 작성한 정보에 대해 발행인(publisher)이나 화자(speaker)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30조 (c)(2)항은 인터랙티브(interactive)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가

2) 박아란 (2020),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언론학보>, 제64권 제3호, pp.5-46.

선한 의도로 음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기타 유해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관리했을 때 민사적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킨다. 당시 의회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의 입법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 유해한 온라인 게시물을 관리·감독하는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의 역할을 행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보호하여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정부 규제로부터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었다.

「통신망법」 제230조가 신설된 이듬해인 1997년에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완전 면책된다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Zeran v. America Online, Inc.*(1997) 사건에서 제란(Zeran)은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익명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아메리카 온라인(America Online)에 요청했으나 게시물은 상당기간 방치되었다. 익명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제란은 게시판 운영자인 아메리카 온라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제란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게시물의 '발행인(publisher)'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은 시점부터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배포자(distributor)'로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230조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발행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배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인 아메리카 온라인을 면책시켰다. 이 판결 이후에도 「통신망법」 제230조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다양한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킨 결과,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 필터링, 감정적 고통 유발 등 다양한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30조는 저작권, 연방 차원의 범죄 기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통신망법」 제230조는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일괄적으로 면책시킴으로써 사업자에게 게시물 관리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불법적 게시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면책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에 인터넷사업자들은 불법 게시물을 탐지하거나 신고 및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동기가 약해졌다. 익명의 이용자들이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 또는 차별과 혐오를 자극하는 게시물을 포스팅하는 웹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이트의 운영자들도 제230조의 보호를 받기에 온라인 규제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온라인 이용자가 허위정보(disinformation)나 오정보(misinformation)를 게시하더라도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의 게시물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구글, 유튜브, 메타(Meta), 인스타그램,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위법하거나 유해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워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2018년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FOSTA(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법안과 SESTA(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두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웹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도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보호 아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면책되어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FOSTA-SESTA 입법으로 인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FOSTA-SESTA가 제정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 촉진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를 소유,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징역, 피해자 배상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온라인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FOSTA-SESTA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FOSTA-SESTA가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정신을 훼손하여 플랫폼에게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온라인 검열을 조장하고, 성매매를 비형벌화하기 위한 표현도 과다하게 처

별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³⁾

이후 제230조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법안들도 발의되었다. 가령, 2019년 발의된 인터넷검열종식법안(Ending Support for Internet Censorship Act)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음을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2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 외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통신품위법상 면책조항이 특정 경우에 플랫폼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개정 필요성은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이슈에 관여되었을 때마다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대표적 사건이 2022년 발생했던 증오범죄 사건이다. 2022년 5월 미국 뉴욕주(州) 버팔로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신봉하는 18세 소년인 페이튼 젠드런(Payton Gendron)이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하여 10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젠드런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를 통해 범죄과정을 생중계했다. 트위치는 2분 만에 영상송출을 중단했으나 범인이 방탄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한 범행 영상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이후 소셜미디어가 혐오와 폭력, 차별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플랫폼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져갔다.

2023년에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See Something, Say Something Online Act(의심스러운 온라인 콘텐츠 신고법), SAFE TECH Act(Safeguarding Against Fraud, Exploitation, Threats, Extremism, and Consumer Harms Act: 사기·착취·위협·극단주의·소비자피해 방지법), Internet PACT Act(Internet Platform Accountability and Consumer Transparency Act: 인터넷플랫폼 책무성 및 소비자 투명성법), EARN IT Act(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Neglec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Act: 인터랙티브 기술의 악용 및 만연한 방임행위 근절법) 등이 있다.⁴⁾ 이 법안들은 세부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제공하는 면책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위법적 게시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거나 콘텐츠 관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제230조가 제정될 당시와 지금의 인터넷 환경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면책

3) Mackey, A. (2022. 9. 15). The Fight to Overturn FOSTA, an Unconstitutional Internet Censorship Law Continues.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URL: <https://www.eff.org/deeplinks/2022/09/fight-overturn-fosta-unconstitutional-internet-censorship-law-continues>

4) 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 10에 소개된 김민정·최요섭·김유향(2023) 연구서 참조.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미국의 인터넷 환경은 제230조라는 초석 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은 인터넷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⁵⁾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이나 페이크 동영상도 일단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제230조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⁶⁾ 「통신법위법」 제230조의 강력한 수호자인 에릭 골드만(Eric Goldman) 교수는 웹사이트의 평판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웹사이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제230조가 이러한 웹사이트를 비호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제230조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⁷⁾

플랫폼 역할론의 재정립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

1996년 제정될 당시 「통신법위법」 제230조가 상정했던 디지털 세상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게시물 관리를 성실하게 행하여 유익한 게시물이 이용자들을 이롭게 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받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부작용의 발생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은 더욱 복잡해졌고 플랫폼사업자들은 폭증하는 게시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사업자들은 자체적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위법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때로는 플랫폼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에 더욱 오래 체류하도록 기술적 수단을 남용하기도 했다.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은 페이스북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로운 게시물이 있음을 알면서도 방관했으며 정치 관련 허위 정보를 방치한 적도 있다고 폭로하여 충격을 주었다. 페이스북이 높은 조회수를 최우선시하면서 참여기반 랭킹을 활용하여 보다 자극적 게시물이 눈에 잘 띄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콘텐츠 관리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이 더 오래 웹사이트에 머물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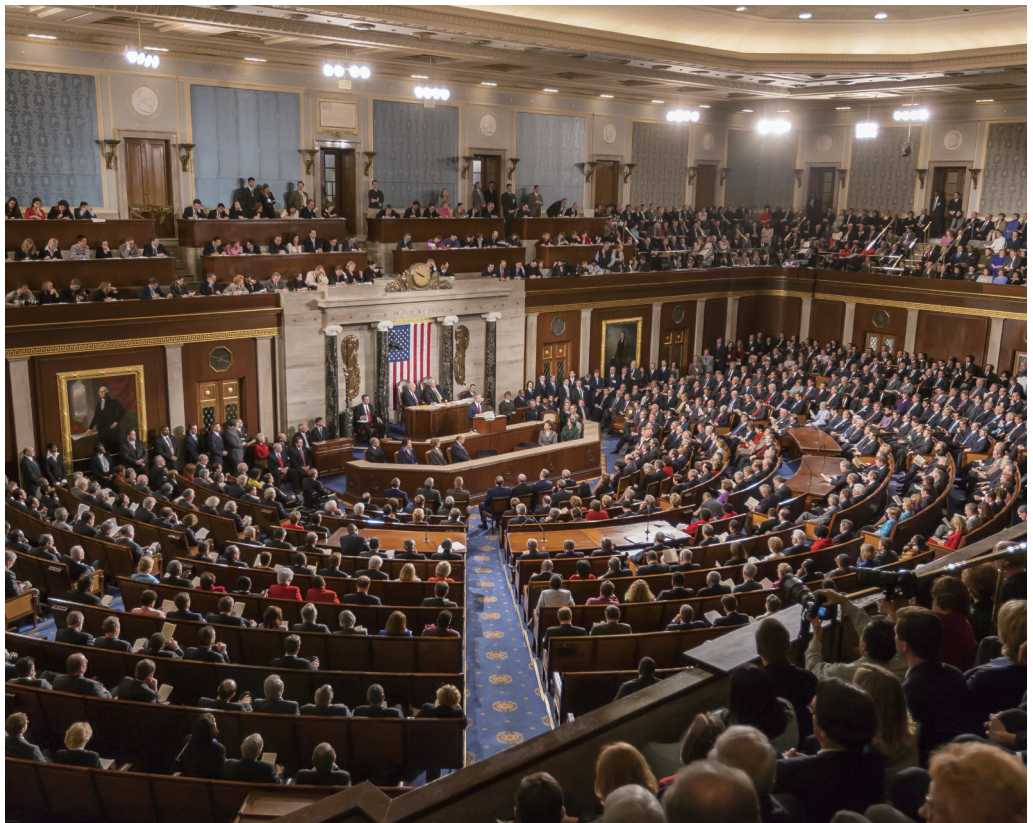
소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의도로 작동시키기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규모가 커

5) Kosseff, J. (2019). *The Twenty-six Words That Created the Interne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6) Post, D. (2019. 8. 9). *The Sec. 230 Temperature is Rising. (The Volokh Conspiracy)*. URL: <https://reason.com/2019/08/09/the-sec-230-temperature-is-rising/>

7) Goldman, E. (2019). *An Overview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230 Internet Immunity*. Santa Clara Univ.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URL: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306737

졌다.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는 인원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기업 내부에서도 다른 팀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작동 알고리즘은 어떠한지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그렇다고 하여 강력한 법을 통해 플랫폼 환경을 규제하기에는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도 어렵다. 결국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와 의회는 이를 위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 관리감독을 행하는 방식으로 함께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극단적일 정도로 인터넷 기업을 면책시켜온 미국의 법체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동규제의 방향으로 한발 내딛었음을 보여준다. 🇺🇸



디지털 권리장전과 표현의 자유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1.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정부는 지난 1년간 미국 뉴욕대, 프랑스 소르본대, 유엔(UN)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디지털 국제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헌장」(이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이는 전문과 함께 총 6개장과 28개의 조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세계적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



은 헌장”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1장에는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그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다섯 가지의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제1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제2조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 제4조 디지털 혁신의 촉진, 제5조 인류 후생의 증진이 그것이다.

이 기본원칙은 다시 2장에서 6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자유와 권리 보장'에는 키오스크(kiosk)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 보장, 디지털 근로, 휴식 보장 등이,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에는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 보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이 마련되었다. 또, '안전과 신뢰 확보'에는 디지털 위험 대응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원칙과, '디지털 혁신의 촉진'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류 후생의 증진'에는 국제 사회와 함께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원칙 등이 제시되었다.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자유와 권리의 보장) 디지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6조(디지털 접근의 보장) 모든 사람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2조(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모든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제26조(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국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디지털기술이 환경과 생태, 기후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 공동체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마련한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해외의 유사 논의와는 달리 보다 포괄적이고 디지털 윤리를 넘어서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며, 특히 국제연대 및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부각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즉 글로벌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디지털 경험과 철학을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사회 기본법’ 등 관련 법령들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도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UN을 비롯한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유럽, 미국 그리고 영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룰 세팅(Rule Setting)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만일 정부의 구상대로 된다면 산업혁명시대에는 영국이, 정보화 시대에는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규범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권리장전과 표현의 자유

19세기 중반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자신의 저서인 <자유론>(On Liberty, 1859)에서 “개별적 주체로서 개인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과 소수의 의견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기본권”, “가장 핵심적인 자유권”, “민주주의가 작동원리” 등으로 명명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고 사회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논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인 간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며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여서는 안 된

다는 것이 미국 표현의 자유 법리의 출발점이다.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공감대가 건국 초기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특별히 위험하고 해악을 유발하는(particularly dangerous and harmful)” 표현만 아니면 모든 표현은 허용한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립한 표현 규제 법리의 기초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널리 전파하는 것을 가능케 한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로 매우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타인의 인격권 침해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과연 디지털 시대 즉,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확장 사이에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명은 표현의 자유 확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19세기 대량 인쇄가 가능한 윤전기가 나오면서 대중 신문이 출현했다. 이는 곧 여론의 힘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부터 법원이 신문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한층 강화되었다. 1970년대에 TV가 보편화되고 지구촌의 소식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더 확대되었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이로부터 더 나아가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보급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일방향적 미디어 기술이 쌍방향적 미디어 기술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디지털 미디어인 인터넷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되어 일방적인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나 수용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에 그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이후 기술적으로 SNS, 포털 미디어, 유튜브(YouTube), 메타버스(Metaverse) 등으로 디지털 미디어가 더욱 진화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독자나 시청자들이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뉴스의 공동 생산이나 유통에 자발적으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별적인 뉴스 배포 관리자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신장된 만큼 개인의 인격권 침해 현상 역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디지털 권리장전은 다음과 같은 조문을 별도로 두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디지털 표현의 자유) 허위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디지털 공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로 발생 가능한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제28조(디지털 국제규범 등을 위한 협력)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편적인 디지털 국제규범의 형성과 집행, 디지털 위험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 시대 속 개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놀랄 만큼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나 SNS 등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보에 노출되었고,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유해 정보의 신속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이라는 특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 중심의 법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책임 및 국제연대와 관련된 조문들은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찰

기술발달에 따라 종래의 출판 중심의 표현의 자유는 방송의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실상 디지털 시대에 표현 방식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표현의 남용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첫째, ‘표현의 자유’ 개념 재정립 시도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확산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신장을 촉진·확장시켰다. 즉 기본권 영역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술과 미디어의 변화는 표현의 자유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다채널·다매체 시대를 반영한 ‘표현의 자유’ 개념의 변화 필요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이를 우리 헌법이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둘째,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심화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문제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나 혐오표현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또 다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사업자 정보유통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세부 내용, 실제 적용사례, 해당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팩트체크의 중요성 부각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정보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와중에 소위 ‘가짜뉴스’라 불리는 근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빠르고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의 남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팩트체크(fact check)의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의 의의, 한계와 향후 개선방안 등의 논의와 팩트체크가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가짜뉴스 및 혐오표현 규제논란

혐오표현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멘 난민과 ‘일베’ 및 ‘워마드’로 대표되는 여성·남성혐오 논란 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독일에서도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혐오발언들이 홍수를 이루자 독일은 인터넷 특히 SNS상에서 발생하는 혐오성 발언이나 성별·인종에 대한 차별발언, 허위정보 등의 생산과 확대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즉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네트워크법’(NetzDG)이란 규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필요성의 근거로 범죄적인 혐오발언 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이



로 인해 오히려 표현의 자유 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주장되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이러한 혐오표현이 난무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혐오표현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나가며

디지털 시대로의 혁명적 변화로 인해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가 현대에 있어서는 미디어크라시(Mediacracy)가 되어 버렸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디지털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은 생산·처리·저장·유통의 모든 면에서 기존의 형태를 뛰어넘는다. 반면 그 정보의 오·남용은 정보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에게 표현의 접근성과 전파성이 대폭 향상시켜주었지만 가짜뉴스나 혐오표현 등 잘못된 표현의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 표현의 자유 법리로는 날로 늘어나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표현의 해악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AS)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법은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및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칙(regulation) 형식으로 제안한 법으로, 유럽전체 인구의 10%

나 되는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Twitter),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불법·유해 콘텐츠 인지 시 신속 제거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고, 어린이 대상 타겟광고는 금지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 콘텐츠 위험분석 및 완화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즉, 「디지털서비스법」은 초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규제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부만 허위정보 관련 대응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정보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자율적으로 불법·유해 콘텐츠를 찾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UN은 2022년 ‘디지털 시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안전강화’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에 의하면 “국가는 디지털 회사가 적법 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 혹은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는 분명 필요하지만,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 그리고 적절한 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유튜브 1인 개인방송도 많은 구독자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경제적인 목적으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현상도 대폭 증가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 보호’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기본권이 보다 치열하게 충돌하는 양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는 연구가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학과 법학이 서로 협력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현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쉽게 예견되고 이에 따른 소송의 폭주 등이 우려되는 등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모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금지규정은 왜 위헌판단을 받았을까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 2020헌마1733(병합) 결정 분석 –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I. 사건의 개요

이 모 씨는 2003년경부터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였고, 2005년경에는 전단 살포를 위한 대형풍선과 장비를 개발하여 특허등록까지 하였다. 박 모 씨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를 통해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하였고, 또 다른 박 모 씨의 경우 2011년경부터 대형풍선 등을 이용해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물품, 금전 등을 살포하였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제3호에서 ‘전단 등 살포’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했고(동법 제25조 제1항), 해당 조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동법 제25조 제2항).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하던 이 모 씨 등은 본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II. 대상 판결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 2020헌마1733(병합) 결정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중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라는 부분이 너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전단 등 살포행위’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데 처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하여 전단 살포를 제재한다는 점 등을 위헌의 근거로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현재는 ① 청구인들이 전단 등을 살포하는 목적은 북한 주민에게 전단, 물품, 금전 등을 전달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는 데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고,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②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위해’나 ‘위험’은 전단 살포행위에 의해서라기보다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나.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위헌의견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현재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하는 네 가지 기준은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우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하였다.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억제될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위협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위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는 위배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 전단 등 살포행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위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그 장소에 모인 사람 등에게 경고를 하거나(제1호),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피난시키거나(제2호),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등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할 수 있도록(제3호)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 전단 등 살포행위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제지했던 사안에서, 법원은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 위 4명의 재판관은 이미 법원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전단 등 살포행위를 상황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근거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음에도 국가 형벌권을 동원한 점, 전단 등의 살포가 국민의 생명 등에 대한 위해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북한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 범죄의 기수(既遂)가 되고, 미수(未遂)가 되는지 모호한 점 등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본 근거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아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실현에 직결되므로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중대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위 4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책임주의원칙 위배 여부

위 4명의 재판관은 결과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설명한 뒤, 전단 등 살포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 생명의 위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나 위험의 발생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그 위해나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전단 살포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지배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보복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전단 살포자의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의 위헌의견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3명의 재판관은 앞서 살펴본 4명의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보았으나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는 달리 판단하였다. 우선, 위 3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책임주의원칙 위반 자체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단 등 살포행위자에게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개별 법원이 고의 여부를 판단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일이며,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유무를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는 위배된다고 보았는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서는 앞선 4명 재판관의 의견과 동일하였지만, ①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고, ② 제한되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③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사전조치가 가능함에도 전단 살포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을 보충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② 심판대상조항이 규제하는 표현은 결국 북한 정권이 비방으로 받아들여 북한이 문제 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규제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③ 국민의 생명 등에 위험을 초래할지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전단 등 살포행위만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았다.

라.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의 반대의견-합헌의견

김기영, 문형배 두 명의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전단 등이 실제 낙하하기 전까지 북한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전단을 담은 풍선 등의 매개물의 비행을 인식하자마자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단 등 살포’



라는 표현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나머지 재판관들이 북한체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제약에 한정해 판단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두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과 동일한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의 ① 목적의 정당성 및 ②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지만, 나머지 재판관들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③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익의 침해나 위험을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구체적으로, 위 두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위헌의 근거로 삼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위험을 방지할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이 만들어진 것이고, 현장에서 경찰의 유연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며, 전단 살포행위를 경찰관에게 일임하는 게 덜 침익적이라는 판단에도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④ 김기영, 문형배 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고 보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처벌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우선 심판대상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의 ‘위험’이란 단순히 위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위

험이 임박하고 그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위험 발생의 여부는 살포행위 당시의 남북 간 긴장의 정도, 살포 장소, 살포 방법, 살포 전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된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것이며, 범죄성립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표현의 내용이 아닌 ‘표현의 방법’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며, 북한체제와 관련한 견해는 내·외신 기자회견, 탈북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 두 재판관은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크고 절실하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판단하였다.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던 것은 얼마 전까지 우리의 현실이었다. 물론,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현재 다수의 견과 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질 상황이 도래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는데 전단 살포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북한체제와 관련한 의견표명이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본 현재 다수의견에 대해 현실적 고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4명의 재판관은 ‘전단살포 행위 금지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현장에서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심판대상조항 이전에도 있었지만 제재수단으로 유효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화되었던 것이었다. 입법 이후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실제로 줄어들어 접경지역의 고조되던 위험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정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만들어진 연혁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위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소수 의견에 더 큰 공감의 간다. 

포털 생태계에서 길들여진 방식 벗어나기

이샘물 동아일보 디지털노বে이션팀장

신문사에 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한다. 기자들이 '신문'이라는 규격에 맞춰서 기사를 고안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무엇을 취재하든 신문 '몇 면'에 '원고지 몇 매 분량으로' 실릴지를 가장 먼저 고민한다. 취재한 내용은 다채롭고 넓을지라도 기자들은 '신문'이라는 틀에 맞춰서 생각할 때가 많다. 1면에 실리는 기사는 통상적으로 '스트레이트성'이어야 하니, '1면 스트레이트'를 어떻게 뽑을지 고민하고 3면으로 해설기사가 이어져야 하니 어떻게 쪼갤지를 고민하는 식이다. 기사에서 다룰 내용이 길고 복잡하더라도 하루에 보도할 수 있는 신문 지면을 넘어서 생각하진 않는다. 내용이 길면 회차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루치 지면에 담는다.

신문이라는 '유통 수단'에 길들여지지 않았더라면 기자들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술의 발달 덕에 이제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런 '형식'이 전제돼 있지 않다면 기자들은 취재 소재를 '진단'부터 할 것이다. 취재보도한 결과물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기획한다는 것이다. 어떤 소재는 영상으로 깊이 있게 담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소재는 인터랙티브한 그래픽을 통해 묘사할 수 있을 것이며, 글이라면 '분량의 한계'나 지면에 따른 '분절'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형식의 잠재력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언론계에서 차별화된 보도를 찾아보는 쉽지 않다. 기술은 진화하지만 기자들의 보도는 천편일률적이고 판박이 같은 경우가 많다. 애초부터 지면을 발행하지 않는 매체마저 기사는 비슷비슷하다. 온라인에서도 지면 못지 않게 강력한 ‘틀’에 길들여져 있는 영향이 크다. 한국의 뉴스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포털이 바로 그것이다. 기자들은 포털에서 기사를 유통하는 틀에 맞춰서 기사를 고안한다. 각 포털은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기자들은 그 틀을 넘어서는 방식까지 적극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포털에서 절대 다수의 소비자가 뉴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그곳의 틀대로’ 유통하는 것을 중요시하거나 당연시한다. 더 나아가 그곳에서 높은 지표율 기록할수록 기사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제작자에게 형식은 사고와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 포털이 지배적인 뉴스 유통 체계로 자리 잡으면서 그 생태계에서의 법칙이 기자들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와 저널리즘의 품질과도 연결되는 이슈이기에 짚어보고자 한다.

숫자에 간과되는 품질

포털에서 기자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트래픽’이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야 기사의 파급력이 커지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자와 데스크들은 포털에서의 트래픽을 적지 않게 신경쓴다.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구조적으로’도 실천된다.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분배받는 수익에는 트래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뉴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언론사에 배분해주는데, 이때 ‘광고 수익 배분 공식’이 있다.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한 산식인데, 기본적으로는 조회수와 순방문자수가 많을수록 광고 수익도 많이 배분받을 수 있다. 누적구독자수, 순증구독자수, 재방문자수 등도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지표에 있어서 언론사들이 포털 생태계에서 목격한 경향은 분명하다. 많이 쓰고 빨리 쓸수록 조회수뿐 아니라 순방문자와 구독자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빨리 쓰고 많이 쓰는 통신사가 포털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점한다. 종합지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보다는 대체로 온라인 속보를 담당하는 기자의 구독자가 많거나 조회수가 높다.

직접 취재했는지,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했는지, 여러 취재원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증했는지 등은 트래픽이나 방문자라는 ‘숫자’로 치환되지 않는다.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뚜렷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 와중에 ‘트래픽을 높이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다. 조회수라는 ‘숫자’로 확인되고

댓글이나 반응도 많아지며 회사 차원에서도 그로 인한 수익이 높아진다. 이런 까닭에 기자 개인뿐 아니라 언론사도 현장 취재 없는 ‘온라인 뉴스 조직’을 통해 트래픽 올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링크가 부재한 생태계

포털 기사에서는 형식상의 제약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기사 본문 내에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에 링크를 표기하려면 온라인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하이퍼링크’ 대신 ‘www.’로 시작해 길게 끝나는 URL 자체를 본문에 기입해야 한다. 독자가 해당 링크를 열어보기 위해서는 주소를 복사해 별도 창에 붙여넣기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기자들에게 포털 기사에서 링크는 ‘반드시 넣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면 지양해야 할 대상’이 된다. 글의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독자가 편하게 열람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열어볼 유인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유통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역행한다. 하이퍼링크는 글로벌 언론계에서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 받는 대상이다. 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독자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사를 작성하는 토대가 된 온라인 자원으로써의 링크는 출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다.¹⁾ 링크 사용은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투명한 인용과 출처 표기’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한국 기자들은 링크를 사용할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링크가 불가능한 생태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링크가 없는 생태계에서는 ‘OOO에 따르면’이 보편적이다. 그마저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느 기사를 인용했는지 정확하게 URL로 안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처는 흐려지곤 한다. 독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찾는 ‘나무위키’가 언론사 기사보다 원문 링크가 풍부하고 정보 출처가 다채롭다는 것은 생각해볼 지점이 많다. 플랫폼 생태계의 물이 콘텐츠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볼 수 있지 않은가.

1) Stray, J. (2010. 6. 8). Why link out? Four journalistic purposes of the noble hyperlink. (NiemanLab). URL: <https://www.niemanlab.org/2010/06/why-link-out-four-journalistic-purposes-of-the-noble-hyperlink/>

일률적인 기사 형식

포털에 게재된 기사들은 형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텍스트가 있고, 중간중간 이미지나 동영상도 들어간다. 앞서 언급한 하이퍼링크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랙티브한 그래픽이나 구성 요소는 기사에 일체 들어갈 수 없다. 대단히 평면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기사로만 채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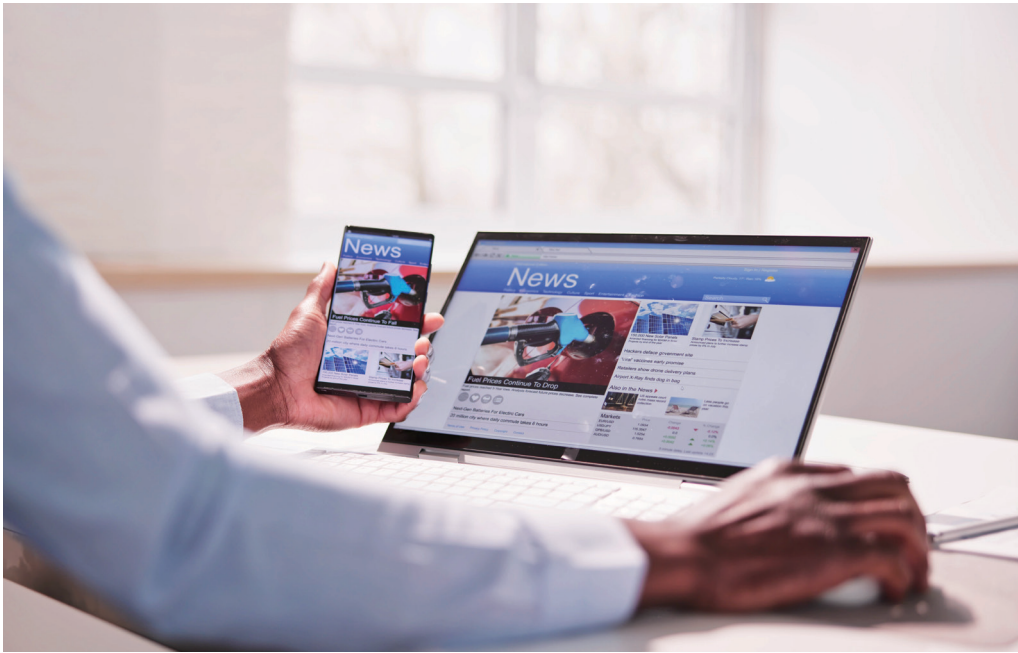
해외 언론사의 뉴스 사이트에서는 복잡한 통계 자료를 그래픽으로 보여줄 때 특정 지점에 마우스를 대면 정확한 숫자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버튼을 눌렀을 때 출처가 된 원(原) 자료를 볼 수 있는 등 색다른 형식의 멀티미디어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내 언론사들은 그런 시도를 많이 하지 않는데, 포털에서는 인터랙티브한 기사를 일체 내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포털에서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출이 적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작비 대비 ‘아웃풋’이 떨어진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상시적인 콘텐츠 혁신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다.

포털 페이지 내에서 다양한 형식을 구현하기 어렵더라도 언론사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outlink)’를 허용하면 기사의 형식은 다채로워질 유인이 높다. 언론사들이 새로운 포맷의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아웃링크를 통해 많은 이용자에게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이저 포털은 ‘인링크(inlink)’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무엇이 선행돼야 하느냐’는 논쟁이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언론사 웹사이트가 광고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이용자들이 그곳으로의 ‘아웃링크’보다는 포털에서의 매끄러운 ‘인링크’ 소비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웃링크가 제한되기 때문에 언론사 플랫폼이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말한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사의 수준과 소비의 품질이 포털보다 높다면 ‘아웃링크’가 선호될 것이다. 언론사 스스로가 이용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멋진 품질을 갖췄을 때 생태계도 변할 수 있다. 기자들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그곳으로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조성할 힘도 생길 것이다.

길들여진 방식 벗어나기

얼마 전 금융사 앱(app)에서 마케팅 리워드 항목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네이버>에서 특정 언론사 채널을 구독하면 1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언론사가 포털에서의 숫자에 얼마나 신경쓰는지, 그와 동시에 그 숫자가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기자들은 본인의 언론사 구독자가 많길 희망한다. 언론사 내



에서도 기자들에게 포털 조회수나 구독자 자체를 성과로 공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조회수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면 성과가 괜찮거나 파장이 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포털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기자일수록 열심히 일하거나 유능한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플랫폼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숫자나 방식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인식된다. 출처를 인용하는 방식이 부실하더라도 그것이 수십 개나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익숙해진다. 형식의 실험에 제약이 있더라도 나쁜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로의 상황임을 알게 되면 ‘원래 그러하다’고 받아들이고 둔감해진다. 보도자료를 단순히 베껴쓰는 기사가 ‘과연 저널리즘인가’ 싶다가도 상당수의 기사가 그러하면 ‘다들 그러는데’ 한다.

언론계에서 ‘탈(脫)포털’이라는 용어가 왕왕 언급된다. 물리적인 탈포털은 논외로 하고,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탈포털’이라고 생각한다. 포털에서 길들여진 사고방식이나 익숙해진 업무 행태를 벗어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에 맞춰서 생각하고 움직일수록 기사의 한계가 뚜렷해진다. 포털이라는 생태계에서 통용되는 룰이나 제약을 벗어나 기사에 ‘깊이와 맥락’을 더욱 가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색다른 방식으로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성과를 향해

필자는 동아일보 내에서 ‘눈높이 세미나’라는 것을 조직해 구성원들과 주기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다. 일명 ‘눈높이를 높여주는 세미나’인데,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깊이 있고 참신하게 구현한 국내외 기사와 작품들을 공유하는 세미나였다. 팀원들이 발견한 ‘가장 높은 수준의 작품’만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목이 향상됐다. 기사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의 폭이 얼마나 넓고 취재해야 할 깊이는 얼마나 깊으며, 구현 방식은 얼마나 다채로워질 수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는 깊이 있는 취재를 차별화된 형식으로 보도하는 ‘히어로콘텐츠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퀄리티 컨트롤과 지속적인 도전은 이런 ‘의식적인 학습’이 밑바탕이 되었다.

저널리즘에서 성과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어라도 손에 잡힐 만한 지표의 일환으로 정량적인 숫자를 신경 쓰고, 그 숫자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포털을 중시할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의 ‘노출’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독자가 ‘어떻게 기억하는가’다. 회사에서 히어로콘텐츠를 제작할 당시 “무엇을 성과지표로 볼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다각도에서 수개월 간 뜯어보며 논의한 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어떤 숫자로도 기사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기자들과 최종적으로 내린 목표는 “우리 스스로가 이 기사를 세상에 내놓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기자들이 인생작으로 부를 자랑스러운 기사를 제작하자는 목표를 삼았다. 포털에서 통용되는 기사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기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던 건 그런 이유에서다.

“저널리즘은 인간 본성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회자된다. 가십과 같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뉴스라는 ‘유익한 정보’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인간 본성과의 싸움’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기사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길들여진 관행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길들여진 플랫폼에서의 관행과 방식을 벗어나 새롭게 도전할 때 기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보수적 사법 적극주의 시대와 New York Times v. Sullivan판결

이효진 변호사, 미국변호사(Washington D.C.)

I.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영역¹⁾인 초상권 침해²⁾보다도 형사처벌의 영역인 명예훼손죄³⁾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형사처벌의 영역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고, 문제된 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⁴⁾가 있으면, 그 언론보도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⁵⁾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영역인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1) 최중상 (2023. 4. 11). 초상권 침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 〈어셈블리 인사이드〉(Assembly Insider). URL: <http://www.assemblyinsider.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

2)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성립한다(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등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행위이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대법원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대법원은 침해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왔으며,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또한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었다.⁶⁾

올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법리를 구체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⁷⁾ 지난 4월에 선고된 위 대법원 판결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사건에 관하여서도 피침해자가 공인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언론보도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의 법리를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적인 관심사 여부 및 공적 인물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법리를 보다 더 구체화하였다.⁸⁾ 위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미국 판례법상 공인의 범위를 넓힌 *Gertz v. Robert Welch, Inc.*⁹⁾ 판결(이하 ‘거츠 판결’이라 한다)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미국 법제상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은 모두 불법행위(torts)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에 한정된다. 또한, 미국 판례법상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책임 판단의 핵심요소인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¹⁰⁾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에 내린 *New York Times, Co. v. Sullivan*¹¹⁾ 판결(이하 ‘설리번 판결’이라 한다)에서 확립된 이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많은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적 보호막으로 작용해왔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인의 범위 판단 요소를 세분화하고, 관련 법리를 구체화함으로써 언론보도의 적법성 예측도를 높여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설리번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보수성향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6) 대법원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7) 대법원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판결

8) 김광중·황예영 (2023. 6. 4).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 조각 법리를 구체화. <법률신문>. URL: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88055>

9)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10) 미국 법률용어인 “Actual Malice”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에 내린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는 ‘현실적 악의’ 외에도 ‘실질적 악의’, ‘실제적 악의’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소개되어 왔으나, ‘현실적 악의’로 번역된 사례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11)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0 (1964)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로는, 2023년 10월에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불허가¹²⁾ 결정에서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연방대법관이 설리번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¹³⁾ 또한, 작년 6월에도 토마스 대법관은 같은 의견을 낸 바 있으며,¹⁴⁾ 재작년 7월에는 닐 고서치(Neil Gorsuch) 연방대법관과 함께 설리번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냈었다.¹⁵⁾ 이하에서는 설리번 판결의 의의 및 보수 성향의 미국 연방대법관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설리번 판결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설리번 판결과 그 의의

1. 시대적 배경¹⁶⁾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시민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 미국 앨라배마(Alabama) 주(州) 몽고메리(Montgomery) 시(市)의 경찰이 비폭력 시위 중이던 흑인들을 강력하게 진압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이하 'NYT'라 한다)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몽고메리 시 경찰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다. 당시 몽고메리 경찰서장이었던 설리번은 NYT의 광고에 게재된 사실 중 몇 가지 사소한 오류가 있었음을 문제삼아, NYT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설리번의 청구를 받아들여, NYT가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설리번에게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으나, NYT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미국 역사상 언론의 자유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여겨지는 설리번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방대법관들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1964년에 선고되었다.

12) 우리나라의 심리불속행 제도('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같이, 미국에는 상고허가(certiorari) 제도가 있다. 미국 상고허가 제도 하에서는 4명의 연방대법관이 상고허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고신청이 기각된다. 강영재·서용성 (2022),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p.48.

13) Cole, D. (2023. 10. 10). Supreme Court declines to revisit landmark libel ruling, though Clarence Thomas to reconsider the decision. <CNN>. URL: <https://www.cnn.com/2023/10/10/politics/new-york-times-sullivan-libel-defamation-law-supreme-court-case/index.html>.

14) De Vogue, A. (2022. 6. 27). Supreme Court declines to revisit landmark First Amendment decision, leaving higher bar for libel in place. <CNN>. URL: <https://www.cnn.com/2022/06/27/politics/supreme-court-new-york-times-sullivan/index.html>.

15) ——— (2021. 7. 2). Justices Gorsuch and Thomas call to revisit landmark First Amendment case New York Times v. Sullivan. <CNN>. URL: <https://www.cnn.com/2021/07/02/politics/supreme-court-landmark-libel-case/index.html>.

16) 성선제 (2002),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명예훼손 -미국 판례법을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제4호, pp.202-206.

2. '현실적 악의' 법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NYT에 대한 설리번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 법리는,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한 공인이 해당 언론사 또는 언론인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이다. 여기서 '악의'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나쁜 의도 또는 악감정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며, 법률용어로서 어떠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설리번 판결에 따르면, 언론사인 NYT가 공직자인 설리번 경찰서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 진위를 검토함에 있어 현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with knowledge that [the defamatory statemen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에만 NYT의 '현실적 악의'가 인정된다. 즉,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보도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이를 보도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현실적 악의'는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민사 소송에서의 통상적인 입증 기준인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보다는 높고, 형사 소송에서의 증명 기준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evidence beyond reasonable doubt)보다는 낮은 기준이다. 설리번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위한 강력한 법률적 보호막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피고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원고 공인이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리번 판결이 선고된 이래로도 미국에서는 공인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피고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 원고 공인이 승소한 사례는 드물다.

3. 미국 판례법상 공인의 범위

설리번 판결의 의의는 공인(public officials and public figures)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도 있다. 공인에 관한 언론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려면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가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지만, 사인(private figures)에 대한 명예훼손적 보도에는 언론사의 '과실(negligence)'이 증거의 우월 기준에 비추어 입증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 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 악의' 요건은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보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의 구분이 때로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한다.

명예훼손 문제에 있어 공인을 사인과는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이유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i)공공 정책이나 공적인 사안에 대한 공인의 영향력이 사인보다 크다는 점,¹⁷⁾ (ii) 공인의 미디어 접근성이 사인보다 높다는 점,¹⁸⁾ (iii)사인과는 달리, 공인은 공적 사안에 스스로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관심을 자초한 점¹⁹⁾ 등을 들고 있다. 미국 판례법상 공인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세분화된 범주로 분류된다.

공인	공직자(public officials)	
	공적 인물 (public figures)	전면적 공적 인물(all-purpose public figures)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purpose public figures)
		비자발적 공적 인물(involuntary public figures)

공직자는 대통령, 정치인, 고위직 관료,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뜻하며, 전면적 공적 인물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평판을 얻은 인물을 의미한다. 전면적 공적 인물에는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 재계의 유명인사, 사회운동가, 성직자 등이 있고,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빌 게이츠(Bill Gates) 등 유명인들이 이에 속한다. 공직자와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 그들의 사생활 거의 모든 측면에 관한 진술에 ‘현실적 악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와 전면적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론보도를 이유로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제한적 공적 인물은 특정 상황 또는 특정 분야에서만 공적 인물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다. 즉, 공공의 관심사인 사회적 논란에 자발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나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 제한적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가령, 낙태반대시위를 주도한 성직자나 청소년 자살문제에 관한 특정 지역의 전문가 등이 제한적 공적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²⁰⁾ 비자발적 공적 인물은 공적인 논란에 자발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상황에 휩쓸려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된 인물을 의미한다. 미국 법원은 비행기 충돌사고 발생 당시에 관제탑에서 근

17)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0 (1964)

18)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19) Id.

20) Examples of Public and Private Figures (2023. 9. 10). <Digital Media Law Project>. URL: <https://www.dmlp.org/legal-guide/examples-public-and-private-figures>

무 중이던 항공관제사²¹⁾ 또는 유명연예인의 배우자로서 공공의 관심사가 된 사건에 휘말린 비(非)연예인²²⁾ 등을 비자발적 공적 인물로 분류한 바 있다. 제한적 공적 인물과 비자발적 공적 인물의 경우, 그 인물이 공적 인물의 지위를 갖게 된 특정 상황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명예 훼손적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 그러나 그 특정 상황 또는 특정 분야를 벗어나서는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인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과실'만 입증되어도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

III. 최근 제기된 보수성향 연방대법관들의 설리번 판결 비판 의견

설리번 판결과 '현실적 악의' 법리, 설리번 판결을 따르는 후속판결에 대한 비판이 최근 들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설리번 판결이 나온 이래,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된 탓에 공인에 대한 심각한 오보에도 언론매체에 대한 면죄부가 쉽게 주어진다는 비판은 1990년대부터 학계나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2020년대부터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뚜렷한 보수화 경향과 함께, 설리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미국 판례법을 형성하는 연방대법관들의 의견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3년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²³⁾, 중도성향의 대법관 1명²⁴⁾, 진보성향의 대법관 3명²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강경 보수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토머스 대법관이 설리번 판결에 대한 비판을 주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설리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21년의 *Berisha v. Lawson* 상고불허가 결정²⁶⁾

언론인인 로슨(Guy Lawson)은 미국 플로리다(Florida) 주(州) 마이애미(Miami) 시(市) 출신으로서 훗날 국제적인 무기거래상이 된 세 청년에 관한 책을 2015년에 출간하였다. 그 책에는 세 청년이 유럽 남동부의 국가인 알바니아(Albania)를 여행하던 중에 마피아 조직원인

21) *Dameron v. Washington Magazine, Inc.*, 779 F.2d 736 (D.C. Cir. 1985)

22) *Carson v. Allied News Co.*, 529 F.2d 206 (7th Cir. 1976)

23) 보수성향의 연방대법관으로는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브렛 캐버니(Brett Kavanaugh), 닐 고서치(Neil Gorsuch), 새뮤얼 알리토(Samuel A. Alito), 클라렌스 토마스(Clarance Thomas) 대법관이 있다.

24)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G. Roberts, Jr.)는 중도성향의 대법관이다.

25) 진보성향의 연방대법관으로는 소냐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이 있다.

26) *Shkelzen Berisha v. Guy Lawson*, 141 S.Ct. 2424 (2021)

베리샤(Shkelzen Berisha)를 만나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그 이듬해에 로슨의 책은 워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사(Warner Bros. Entertainment Inc.)에 의하여 “군견들(War Dogs)”이라는 영화로 제작된다. 실존 인물이자 알바니아인인 베리샤는 자신을 알바니아 마피아 조직원으로 묘사한 로슨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인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은 (i) 베리샤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ii) 로슨은 언론인이므로 로슨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려면 베리샤가 로슨의 (iii) ‘현실적 악의’를 (iv)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베리샤는 증명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 법원인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11th Circuit)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하였다. 이에 베리샤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연방대법원 또한 상고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이때 토마스 대법관과 고서치 대법관은 상고불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설리번 판결을 비판하였다.

1) 토마스 연방대법관의 반대의견

토마스 대법관은, 설리번 판결의 ‘현실적 악의’ 법리는 미국 헌법의 구조나 역사적 문맥과는 무관하며, 영미보통법(Common Law)상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법리가 대세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인은 공공의 관심과 그에 따른 위험을 자초하였으므로 언론보도에 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현실적 악의’라는 높은 증명 기준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거츠 판결을 비판하면서, 오보의 피해자가 된 공인에게 사인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공공의 관심을 자초한 바 없으나 의도치 않게 공적 사안에 휘말리면서 공적 인물로 분류된 비자발적 공적 인물에 대하여서도 ‘현실적 악의’의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력해진 오늘날 미디어를 통하여 퍼진 루머나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낙인이 피해자가 된 공인의 삶에 얼마나 강한 타격을 입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2)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반대의견

고서치 대법관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는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free exchange of ideas)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며, 언론의 자유라는 권리에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여야 할 의무가 따른다는 원칙이 영미 보통법과 미국 역사의 근간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건국 이래로 미국 역사

와 법률의 근간을 이루어 온 그 원칙은 1964년에 이르러 설리번 판결이 선고되면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하였으며, 공인의 범위 또한 설리번 판결을 계승한 거츠 판결에 의하여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설리번 판결과 그 후속판결이 나온 1960~70년대의 미디어 환경에 비하여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크게 달라졌음을 강조하면서, 누구라도 손쉽게 잘못된 정보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설리번 판결의 의의 또한 크게 퇴색하였으므로 ‘현실적 악의’ 법리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2. 2022년의 Coral Ridge v. SPLC 상고불허가 결정²⁷⁾

비영리 기독교단체인 Coral Ridge Ministries Media, Inc. (이하 ‘코랄릿지’라 한다)는 미국의 다국적 대기업 아마존(Amazon)사(社) 산하 기부매체프로그램인 아마존스마일(AmazonSmile)에 기부대상 단체목록에 게재되기 위한 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아마존스마일은 코랄릿지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민운동단체인 Southern Poverty Law Center(이하 ‘SPLC’라 한다)가 공개하는 혐오단체(hate group) 목록 상 코랄릿지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단체’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코랄릿지는 SPLC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SPLC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항변으로 내세웠다. 1심 법원인 앨라바마 북부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Alabama)은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SPLC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려면, 공인의 범주에 속하는 코랄릿지에 대한 SPLC의 성소수자 혐오단체 지정행위가 (i) ‘현실적 악의’에 기반하였다는 사실 및 (ii) 코랄릿지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i), (ii) 요건 중 어느 요건도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코랄릿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인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11th Circuit) 또한 코랄릿지가 SPLC의 ‘현실적 악의’를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로써 증명하는 데에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코랄릿지는 연방대법원에 ‘현실적 악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상고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토마스 대법관은 위 상고불허가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설리번 판결은 미국 헌법이나 역사와는 무관한 판결이자 헌법을 가장한 정책 주도적 판결”이라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현실적 악의’ 법리가 대중매체나 이익단체들의 공인에 대한 비방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면책에 가까운 혜택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현실적 악의’

²⁷⁾ Coral Ridge Ministries Media, Inc. v. Southern Poverty Law Center, 142 S.Ct. 2453 (2022)

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증명기준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만으로는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방대법원은 전통적인 피해구제수단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을 거짓보도를 지속하는 언론에 대하여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2023년의 Don Blankenship v. NBC 상고불허가 결정²⁸⁾

한때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 주(州)의 상원의원 후보였던 블랭컨십(Don Blankenship)은 미국 연방법상 공모죄로 1년간 수감된 후 석방되었다. 블랭컨십이 수감된 사건을 다루면서 대중매체들은 그를 ‘중범죄자(felon)’로 묘사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블랭컨십은 수많은 언론사 및 언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인 웨스트 버지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West Virginia)은 피고가 된 언론사 또는 언론인들 가운데 16명에 대하여 블랭컨십의 손해배상청구를 약식판결(Summary Judgment)로 기각하였다. 이에 블랭컨십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인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11th Circuit) 또한 블랭컨십이 위 16명의 피고들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로써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블랭컨십은 ‘현실적 악의’ 법리를 재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방대법원 또한 상고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토마스 대법관은 블랭컨십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상고불허가 결정 자체에는 별도의 이유가 있으므로 동의하지만 설리번 판결의 ‘현실적 악의’ 법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판적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마스 대법관은 미국 건국 이래 1964년까지의 명예훼손법은 주 법원 및 주 의회가 규율하여 온 영역이었음을 강조한 후, 연방대법원이 1964년에 설리번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 법원과 주 의회의 권한을 박탈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더 높은 증명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설리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본질적 의미에 기초하지 않은 판결이며,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 범위를 벗어난 ‘현실적 악의’ 법리를 더 이상 정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²⁸⁾ Don Blankenship v. NBCUniversal, LLC, et al., No. 22-1125 (S.Ct. October 10, 2023)

IV. 나가며

1960년대 미국에서 인종차별철폐운동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설리번 판결은 진보적 사법 적극주의²⁹⁾ 시대로 평가받는 얼 워런(Earl Warren)³⁰⁾ 연방대법원시절에 나온 판결이다. 설리번 판결 및 그에 따르는 후속판결들로 구성된 연방대법원 판례는 언론의 자유를 위한 법률적 보호막 역할을 반세기 이상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들의 비판에 설리번 판결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2020년대 들어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연방대법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Roe v. Wade³¹⁾ 판결(이하 ‘웨이드’ 판결이라 한다)이 Dobbs v. Jackson³²⁾ 판결에 의하여 뒤집힌 데에 이어, 뉴욕 주의 총기규제법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거나³³⁾ 미국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권한을 부정하는³⁴⁾ 등의 퇴행적 판결이 2022년 한 해 동안 잇달아 내려졌다. 종래의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들은 통상적인 의미의 사법 소극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으나, 보수화된 2020년대의 연방대법원은 선례를 번복하는 방식으로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면서 미국 사회의 우경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보수적 사법 적극주의로 평가된다.³⁵⁾ 이러한 측면에서 설리번 판결에 대한 보수성향 연방대법관들의 비판 역시 보수적 사법 적극주의 시대라는 시간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설리번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관들의 비판 중에서도 1960년대의 미디어 환경과 2020년대의 미디어 환경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오늘날에 맞게 설리번 판결의 ‘현실적 악의’ 법리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나, ‘현실적 악의’ 법리가 공인에 대한 오보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언론에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비판은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주요판결에서 드러난 연방대법원의 성향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것은, 건설적 비판에 기반한 ‘현실적 악의’ 법리의 수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웨이드 판결의 경우처럼 설리번 판결 또한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수적 사법 적극주의 시대에 설리번 판결이 그 존립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9) 미국의 경우, 입법 또는 행정부와와 관계에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입법 또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사법 적극주의, 입법 또는 행정부의 재량을 존중하면 사법 소극주의에 해당한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사법 소극주의, 종전 판례를 적극적으로 번복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사법 적극주의로 분류하기도 한다.

30) 얼 워런이 미국 제14대 연방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인종차별적 관행금지를 유도하는 진보적인 연방대법원판결이 다수 내려졌다. 설리번 판결 또한 언론의 자유보호를 위한 판결이면서도 인종차별문제의 개선 요청을 의식한 진보적 판결이기도 했다. 그가 연방대법원장으로 재직할 시절을 “워런 대법원”시절로 일컫기도 한다.

31) Roe v. Wade, 410 U.S. 113 (1973)

32)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142 S.Ct. 2228 (2022)

33)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142 S.Ct. 2111 (2022)

34) West Virginia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42 S.Ct. 2587 (2022)

35) 이진영 (2022. 7. 4). 美 뒤흔드는 사법 적극주의.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703/114268688/1>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이석형 위원장은 11월 3일(금)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간담을 갖고, 강원지역의 주요 언론 현황과 위원회 언론조정 제도 운용 현황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윤경아 중재부장(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강원중재위원들과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중규 춘천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동욱 강원CBS 본부장, 전종률 G방송 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 박종원 KBS춘천방송총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7호 발간

위원회는 11월 10일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7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반론권 관련 해외법제의 최근 동향,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방식 분석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구 외신기자클럽)에서 2023년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관이 ‘국내외 언론의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 및 입법례’를 주제로, 김창숙 박사(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제주 지역 언론인 워크숍 개최

위원회는 11월 23일 제주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성원 선거기사심의팀 차장과 최영훈 제주사무소장이 각각 '언론인이 알아야 할 시정권고 제도 및 사례'와 '슬기로운 언론분쟁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정용복 제주언론인클럽 사무처장이 '시 시대 미디어 리더러십을 통한 지역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2023년 JERAA 국제컨퍼런스 참석

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3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저널리즘 교육연구협회(JERAA)가 주최한 <2023년 JERAA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저널리즘의 과제-사회, 규제, 갈등과 위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 저널리즘, 전쟁보도, 미디어 다양성, 젠더 저널리즘 등 언론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종세 부위원장(서울제4중재부), 서정찬 위원(서울제7중재부), 김광석 위원(서울제8중재부), 조준원 사무총장, 이홍길 교육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장에는 심창섭 위원(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감사)이, 부위원장에는 박혁진 위원(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융합기술경영학과 특임교수)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운영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
 언론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윤리강령을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아직 비판이 더 많아 보입니다. 언론중재 겨울호에서는
 언론의 자살보도 이슈와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는 자살보도는 어떤 모습일지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재학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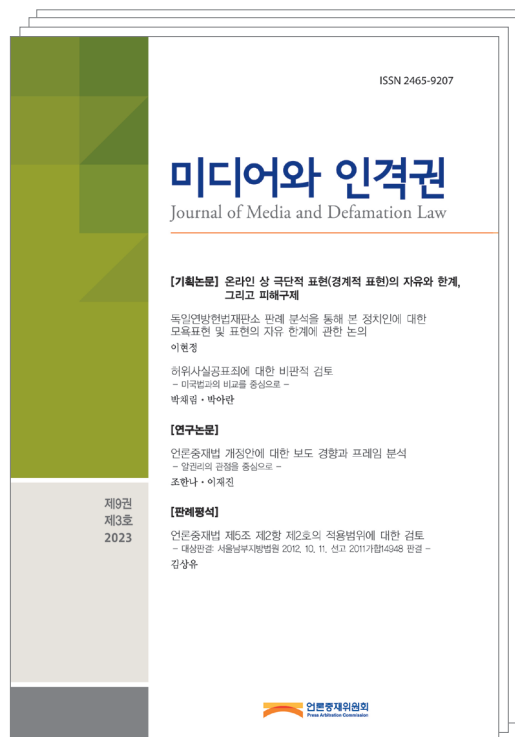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발간

...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며 연 3회 발간(4월, 8월, 12월)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www.pac.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